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라	



제657호 2022. 8. 12.(금)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618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고창군 조례 제2619호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7
- 고창군 조례 제2620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 고창군 조례 제262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199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41
- 고창군 규칙 제120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6
- 고창군 규칙 제1201호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93

【훈 령】

○ 고창군 훈령 제502호 고창군에 두는 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₉₇

회				
람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2-96호 상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₁₀₁
- 고창군 고시 제2022-99호 고창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104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1단계)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2-1325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107
- 고창군 공고 제2022-1326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3
- 고창군 공고 제2022-1329호 2022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볏짚 119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8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618 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 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제5호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 이상 40명 이하"를 "1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보장</u>	제1조(목적) <u>「사회보장</u>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u>이라 한다) 제41조</u> 에 따라 고창	<u>지역사</u>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	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4조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읍면협의체) ① 군수는 읍면	제8조(읍면협의체) ①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u>읍면사무소</u> 에 읍면협의체를	<u>행정복지센터</u>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2
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	<u>10명 이상</u>
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생략)
-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3. 4. (생략)
- 5. 읍면사무소 사회보장·보건의 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6. (생략)
- ③ ~ ⑥ (생 략)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다.
-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 2. · 3. (생략)
- ④ (생략)
- 제11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읍면 사회보 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복지위원을 위촉한다. ②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하되, 읍면 각 2명 이상으로 한

- 1. (현행과 같음) <삭 제>
- 3. 4. (현행과 같음)
- 5. 읍면행정복지센터 -----
 - 6.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국) ①・② (생 략) 제9조(사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 2. 3.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삭 제>

다.

-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④ 복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에 대한 상담
-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 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 을 보호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 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 제15조(위원의 임기) <u>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 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8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619 호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물놀이장"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 2. "이용자" 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관리자" 란 군수가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자(물놀이장의 사무·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 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 등)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657호

- ④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
 - 2. 운영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다만, 야간 개장의 경우에는 20시까지 연장 가능
 - 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이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으며,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물놀이장 질서나 안전을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3. 위험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 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물놀이장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놀이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여름철에 운영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 · 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 수칙(제4조 관련)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

-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 물놀이장 시설이용 시작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 · 물놀이장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한다.
- · 사고발생 시 경미한 사고는 안전근무자가 선 조치 후 사무실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 하고 중상인 경우 사무실과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놀이장 이용 수칙

-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 ·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중용 기능성 신발을 제외한 신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 · 물놀이장 내에서 취사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 물놀이장 주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 ·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 · 눈병, 피부병 등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 물놀이장 내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 · 대형튜브(지름 1m 이상)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이용료(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요 금	적 용
청소년 및 어른	3,000	만13세 이상
유아 및 어린이	무료	만2세 이상 ~ 만12세 이하

이용료 감경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요 금	대 상
청소년 및 어른	早	1.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고창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자 1인을 동반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기타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 6. 비고
 - 가. 고창군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나. 고창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 추천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8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620 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정책관·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정책관·과·소장과 읍·면장의 사무 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과 농어촌 산업국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종합 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둔다.
 -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심사분석,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2. 예산 · 투자심사 ·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3. 군정평가 · 원가심사 ·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4. 감사 및 자치법규·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5. 군 의회 지원,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 ③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주민등록·인감 발급, 생활민원기 동처리반 운영
 - 2. 주택·건축 관련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3. 주거복지 및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 4.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5. 허가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
 - 6. 개발행위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7.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소, 토지거래 등에 관한 사항
 - ④ 신활력경제정책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노을대교, 인구정책,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

- 2. 실업대책 종합기획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3. 청년, 창업관련 및 사회적 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 4.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업무 전반
- 5.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소상공인, 시장에 관한 사항
- 6. 해상풍력, 에너지 관련 업무 전반
- 7.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군 산하기관 지도 감독, 공무원 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2. 문서 · 보안 관리,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반행정육성에 관한 사항
- 4. 조직 · 인사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5. 군 행정의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 6. 행정정보화사업 종합운영 · 관리, 행정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사회 복지과, 인재양성과, 환경위생과, 재무과를 둔다.
 - ②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획·조정, 관광정책 기획·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 2. 관광지 관리 및 관광개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3. 유네스코세계유산 지정·관리·이용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4. 생물권보전지역 보전·발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5. 생태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 6. 지역문화예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7.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확충 · 관리에 관한 사항

- 8.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 선양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9. 도서관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10. 문화재 지정 · 관리 · 해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2. 보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3. 자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4. 위기가구 발굴 ·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사회보장급여 조사 · 관리에 관한 사항
- 16.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17. 사회복지 관련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장묘·장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9.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20.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 21. 자원봉사, 기부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2.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23. 여성 · 아동 복지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4.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 2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6. 보육관련 시설 및 보육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27. 환경관리·보호·보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 28.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 29.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대책 수립·시행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30.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3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32. 고창군 청소대책 수립, 환경미화원 및 청소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33.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관리, 쓰레기 종량제 운영 에 관한 사항
- 34. 세정업무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35. 지방세(도세 · 군세)에 관한 사항
- 36. 입찰·계약·지출·복식부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37. 국유·공유재산·청사관리·관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8. 지방세외수입·징수 종합계획 수립, 자금 재배정, 지방세·국세 징수, 개별주택가격 등에 관한 사항
- 39. 기타 관광, 생태, 문화, 예술, 복지, 교육지원, 평생교육, 환경, 관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농어촌산업국에 두는 과)** ①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 ② 농어촌산업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2. 농촌공익적가치 및 농어민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3. 수도작 및 식량작물 생산 등에 관한 사항
 - 4.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사항
 - 5. 특용·원예작물 생산·수급 등에 관한 사항
 - 6.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에 관한 사항
 - 7. 농촌활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
 - 8. 6차산업 등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 9. 고창농수축산물 국내 유통 및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
 - 10. 고창농수축산물 해외 수출에 관한 사항
 - 11.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역공동체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12. 해양수산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 13. 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 14.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5. 해양수산 시설에 관한 사항
- 16. 연안 및 갯벌생태계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 17. 어촌 · 어항 개발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18. 축산 생산기반 확충 및 축산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19.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 20.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 21.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22.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3. 산불방지,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24. 공원계획, 녹지 및 경관조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5.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6. 재난안전 정책총괄 업무
- 27. 민방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8. 지역단위 재난·재해·안전, 방재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29. 재해복구,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피해시설 복구, 복구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30.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및 조성계획 수립
- 31. 원전·방사능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32. 도로·지방도 유지관리,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33. 농업 생산기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4. 군관리계획, 도시개발 정비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35. 국토종합계획·개발촉진지구, 도시가로망 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 3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37. 도시재생 업무 총괄·기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38. 교통 · 운수행정 종합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9. 기타 농업, 해양수산, 축산, 산림, 재난, 하천, 건설, 도시, 교통 등에 과한 사항 전반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를 둔다.
-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소관사무) 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 2. 농업인 교육, 농촌생활·농업경영·농업환경 개선, 작물 재배기술 지도 에 관한 사항
 - 3. 특수작물 · 신품종 등 재배 기술 연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4. 귀농귀촌 및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 5. 농기계 임대 전반에 관한 사항
 - 6. 복분자 관련 연구사업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할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사업소

- 가. 군민체육진흥 종합대책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레저·스포츠 행사 유치·지원·개최 등 레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 다. 체육시설 확충 ·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 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 보급,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종합시행에 관한 사항
 - 나. 상수도 인력 및 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간이 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 관리.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소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읍 · 면

-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 · 면사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하부 행정기구) ① 읍·면(이하 "읍·면"라 한다)의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읍 · 면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고, 총무팀장이 겸임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상생경제과장"을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울력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어촌식품과장"을 "행정지원 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 ⑤ 고창군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 기획예산실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한다.
- ⑦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과·소장, 담당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 ⑧ 고창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항 중 " 및 담당관"을 삭제한다.
- ⑨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소관부서 국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명업무담당 국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1호를 "지명업무관련 담당과장"을 "지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 ②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관업무 담당국장이"을 "부군수가"로 한다.
- ③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소관업무 담당실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관부서 국장으로"를 "부군수로"로 한다.
- ⑤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관부서 국장으로"를 "부군수로"로 한다.
- ⑥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군수, 울력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울력행정팀장"을 "행정팀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으로"를 "부군수로"로 한다.

- ®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담당관"을 "국·실·과·소, 정책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울력행정과 울력행정팀장"을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신지식선도 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1호 중 "지원 실과소장"을 "지원 부서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소관 업무 실과소"를 "소관 업무 부서"로 한다.
- ②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과, 담당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사업소"를 "실·정책관·과·소"로 한다.
- ② 고창군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 국장"으로, "문화유산관광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어촌식품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상생경제과장"을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하고, "문화유산관광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고창군지 편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정책팀장"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⑩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으로하고 제4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2조 제4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
- ②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인재양성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 관련업무 과장·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관련 업무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 상생경제과장,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장, 울력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신활력경제정책관, 관광산업과장, 인재양성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울력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인재양성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 울력행정과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을 "인재양성과장,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민생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기획예산

- 담당관, 보건소장"을 "사회복지과, 신활력경제정책관, 건설도시과장,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1호 중 "생태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문화유산관광과장, 생태환경과장"을 "관광산업과장, 환경위생 과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⑩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담당관·소, 직속기관, 사업소"를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으로 하고, 제4조제1호 "각 과·담당관·소,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 소관 물품 : 과·담당관·소,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장"을 " 각 실 ·정책관·과·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 소관 물품 :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또는 읍 • 면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 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유산관광과장, 농생명지원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관광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다.
- ④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과장・담당관"을 "국・실・과장, 정책관" 으로 하고, 제15조제1호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농생명지원과장, 농어촌식품과장"을 "기획 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 ⑭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생명지원과장, 농어촌식품과장"을 "농어촌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 "농업정책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정책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농어촌식품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제2항 제3호 중 "농생명지원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농업 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생명지원과장, 농어촌식품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 농어촌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농어촌식품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며, 제2항제3호 중 "농생명지원과장, 상생경제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⑤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한다.
- ⑤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하고, "농어촌식품 과장"을 "담당과장", "생태환경과장"을 "위생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5항제3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선운산복분자 상표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농생명지원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또한 제9조제5항 중 "마케팅팀장"을 "유통마케팅팀장"으로 한다.
- ⑤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농어촌식품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농어촌식품과"를 "농촌활력과"로 한다.
- ④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재난 관리팀장"을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⑤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5항제2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⑤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상생경제과"를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생태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 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과장·담당관·소장"을 "실장·정책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제2호 중 "국장, 과장, 담당관 및 소장"

- 을 "국장·실장·정책관·과장·소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실·과·소"를 "실·과·소, 정책관"으로 하고, 제2조제6호, 제7조제3항 중 "실·과·소장"를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
- ⑤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과·소장·담당관"을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
- ⑥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 상생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건설도시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관광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상생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실장"을 "기획 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수 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농수축산 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며, 제3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66)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⑩ 고창군 복분자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생명지원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⑩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식품과장, 농촌개발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② 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농촌개발과장" 을 "담당업무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생명지원과장, 농어촌 식품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2호 중 "과관소장"을 "실·과·관·소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이"을 "부군수가"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농어촌식품과장, 상생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경제정책관, 농촌활력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 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호 중 "일자리창업팀장"을 "경제일자리팀장" 으로 한다.

- ⑤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이"을 "부군수가"로 한다.
- ⑩ 고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과장"을 "신활력경제 정책관"으로 한다.
- ⑦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소관업무 실·과장, 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상생경제과장"을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한다.
- ®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호 중 "부군수, 농수축산경제국장, 문화복지환경국장, 상생경제과장, 생태환경과장, 재무과장"을 "부군수, 농어촌산업국장, 자치행정국장, 신활력경제정책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고창군보건소	고창읍 전봉준로 90 (율계리 101)	고창군 일원
고수면보건지소	고수면 고인돌대로 1408-5 (황산리 269-4)	고수면 /
아산면보건지소	아산면 녹두로 763 (하갑리 639-9)	아산면 /
무장면보건지소	무장면 청보리로 1544 (무장리 458-1)	무장면 〃
공음면보건지소	공음면 공음길 89 (칠암리 617-4)	공음면 〃
해리통합보건지소	해리면 해리중앙로 174 (안산리 512-1)	해리면·상하면 일원
성송면보건지소	성송면 대성로 763-4 (판정리 36-2)	성송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	대산면 공음대산로 936-9 (매산리 198-36)	대산면 /
심원면보건지소	심원면 심원로 209 (월산리 779-6)	심원면 /
흥덕면보건지소	흥덕면 흥덕초등길 16 (흥덕리237-16)	흥덕면 /
성내면보건지소	성내면 시기1길 43 (양계리 206-8)	성내면 /
신림면보건지소	신림면 임리1길 9 (무림리 299-6)	신림면 /
부안면보건지소	부안면 난산1길 17 (중흥리 169)	부안면 /
덕정보건진료소	고창읍 전봉준로 204-2 (덕정리 76-1)	율계리-율계 신월리-신월·신동 죽림리-죽림·송암 덕정리-덕정·석탄
반암보건진료소	아산면 인천강변로 656 (반암리 910)	구암리-구암 반암리-반암·호암·마명·탑정·강정 삼인리-삼인·석상
송산보건진료소	공음면 건동길 71-20 (건동리 770-1)	건동리-상건·송산·하건 선동리-남산·선동·대정·해정·선산 군유리-하군·상군·비석
평촌보건진료소	공음면 덕암로 257 (덕암리 82-1)	덕암리-평촌·창평·지음 예전리-응암·상여·중여·평산·금정 용수리-용수·청천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장호보건진료소	상하면 용사길 5 (장호리 530-7)	장호리-장호·용두·복구 용정리-판정·동촌·광촌·용산·서당·섬포
자룡보건진료소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344 (자룡리 191)	자룡리-자룡·신자룡·구시포 석남리-석남·월곡·갈산·송라
사반보건진료소	해리면 봉수로 669 (사반리 1214-1)	사반리-사반·미산·각동 나성리-나산·월봉·매남 방축리-방축·만화 왕촌리-용반·안복
관동보건진료소	성송면 관동로 234 (낙양리 881-5)	목동리-목동·남촌(아산) 목우리-목우·월평(무장) 인성리-위성·인동(고수) 낙양리-관동·호동·계촌·낙양(성송)
해룡보건진료소	대산면 해룡로 95 (해룡리 72-1)	갈마리-갈마 해룡리-신월·반월·대촌 회룡리-구동·용두 춘산리-약산·반룡
성동보건진료소	대산면 성동길 9-4 (성남리 45-11)	중산리-곡촌·미동·중산 성남리-성남·성동 옥산리-신월(무장)
용반보건진료소	흥덕면 용반안길 63 (용반리 179-1)	석우리-석우 용반리-용반·남당 하남리-예촌·행정 신송리-신송·노동 신덕리-상연 사포리-주항
낙산보건진료소	성내면 은낙길 71 (산림리 298-5)	산림리-낙산·죽동 용교리-교동·학동 양계리-석양 대흥리-대흥 신대리-대천·해평 월산리-한정·죽림·내안
덕산보건진료소	성내면 근촌로 274-12 (덕산리 90-7)	덕산리-생근·백연 신성리-관동·칠성·장수 조동리-조동 부덕리-엄동·부덕
가평보건진료소	신림면 가평로 478 (가평리 659-4)	가평리-가평·노동 신평리-신기·입전 반룡리-반룡·월평 덕화리-덕화
상암보건진료소	부안면 인촌로 534 (봉암리 202-3)	상암리-석암·농원·신농원·상포·반월 봉암리-인촌·봉오 수앙리-용현·반룡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백양보건진료소	고창읍 백양길 20 (덕산리 134-3)	덕산리-덕산백양신덕산 내동리-내동·은동 와촌리(고수면)
내창보건진료소	고수면 내창수곡길 95-2 (초내리 23-2)	초내리-초내·내창 평지리-평지·청계 장두리-장두·오산·월계 부곡리-연동
강남보건진료소	무장면 석곡로 65 (강남리 237-6)	강남리-강남·석수·덕산·조치 옥산리-가라·송정 고라리-송림·송암
금평보건진료소	해리면 금평1길 17 (금평리 1502-1)	동호리-구동호·남부·신동호·삼양동·가재지 광승리-광승·외경·내경·상부 금평리-금평·월산·목동·용호
정동보건진료소	심원면 고전로 256 (만돌리 261-1)	고전리-고전·진주·예동·염전 만돌리-난호·계명·정동 두어리-두어
상하보건진료소	상하면 상하로 86 (하장리 899-6)	장산리-고산, 장암, 기산, 생장 검산리-상라, 검산, 모암, 상수 송곡리-송정, 송림, 장기 하장리-하장
선운보건진료소	부안면 질마재로 29-20 (선운리 920-1)	선운리-진마, 신흥 송현리-안현, 고잔, 신기 용산리-연기, 용산, 용흥
하전보건진료소	심원면 동전길 30-14 (하전리 262-8)	하전리-상전, 동전, 서전 용기리-용기, 수다
후포보건진료소	흥덕면 후포후동길3-10 (후포리 503-1)	신덕리-신덕·목우·하연 후포리-후동·대촌··후서 사포리-사포 교운리-교운 오호리-오태·석호

[별표 2]

<u>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u>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고창군 고창읍 중거 (고창읍 읍내리 512	리당산로 94 -1)	고창군 일원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체육시설사업소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고창읍 월암리 316)
상하수도사업소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 (고창읍 덕산리 209-1)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8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621 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2% 이내	28% 이내	8%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7	그 분	전문경력관
ъ,] 율	1% 이내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	구 직	지 !	도 직
। ए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41% 이내	-	41% 이내	18%이상	-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 무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 계 855 855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4	794				
4 급	4	<u>3</u>		<u>1</u>		
4 - 5 급	1	<u>1</u>				
5 급	36	16	1	<u>3</u>	<u>2</u>	<u>14</u>
6급 이하 계	753			753		
별정직 계	5			5		
5 급 상 당	2		2			
6급상당 이하 계	3			3		
연구직 계	8			8		
연 구 사	8			8		
지도직 계	40			40		
지 도 관	3			3		
지 도 사	37			37		
전문경력관 계	7			7		

신・구조문 대비표

	ই	<u>력</u>		행				개		정	인	•	
] 방공무원 난직공무원	기준] 방공무원 ^{난직공무원}		l급별	정원	책정.	기준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2% 이내	28% 이내	8% 이상	비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2% 이내	28% 이내	8%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 포함힌	남.	
2. 지병	상전문 경력	관					2. 지병	} 전문경력	관				
구 분	전문경력	관					구 분	전문경력	관				
비 율	1% 이내						비 율	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 포함힌	남.	
3. 연구	구직·지도 ²	직공무원	<u> 1</u>				3. 연구	² 직·지도	직공무원	<u> 1</u>			
구 분	연 구	7	직	지	도	직	구 분	연 -	구 :	직	지	도	직
1 T	연구관	연-	구사	지도관	. 7	지도사	T	연구관	연-	구사	지도관	<u>}</u> :	지도사
비 율	3%이내	97%	이상	9%이니	91	L%이상	비 율	3%이내	97%	이상	9%) ા	H 9	1%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4. 별정	성직공무원	[4. 별정	성직공무원	<u>l</u>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딩			9급상 당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급 ·당	9급상 당
비 율	41% 이내	<u>41%</u> 이내	<u>18%</u> 이성	- 1 -	-	-	비 율	41% 이내	-	<u>41%</u> 이니	_ _	3% 상	-
1. 일	이내 이내 이상 이상						1	1] 반직과 별정 ·면의 공·					·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박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	^{결표 3]} 정	원관리	기관	별 2	식급병	별 정	원표	
7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가구	작 7관	시업 소	읍면	\ Z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가구	<u>쌲</u> 걘	시업 소	음면
	총 계	855			855				총	계	855			855		
	정무직계	1			1				정무	직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4			794				일반건	딕 계	794			794		
	4 급	<u>3</u>	<u>3</u>						4	그	<u>4</u>	3		1		
	4 - 5 급	<u>2</u>			1		1		4 -	5 급	1	1				
	5 급	<u>34</u>	16	1	1	<u>3</u>	<u>13</u>		5	그	<u>36</u>	16	1	<u>3</u>	2	<u>14</u>
	6급 이 하 계	<u>755</u>			<u>755</u>				6 급 하	이 계	<u>753</u>	<u>753</u>				
	별정직 계	5			5				별정건	식 계	5			5		
	5급상당	2		2					5급	상당	2		2			
	6급상당 이하 계	3			3				1	상당) 계	3			3		
	연구직 계	8			8				연구건	식 계	8			8		
	연구사	8			8				연 -	구 사	8			8		
	지도직 계	40			40				지도격	식계	40			40		_
	지도관	3			3				지	도 관	3			3		
	지도사	37			37				지	로 사	37			37		
	전문경력관 계	7			4				전문경 겨		7			4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8월 12일

고창군 규칙 제 1199 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실장·정책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국장·실장·정책관·과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조·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 · 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본청

- 제4조(국장·실장·정책관·과장의 직급) ① 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실장·정책관·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정책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또는 간호직렬로 보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과 · 기술지원과를 둔다.

- ② 농촌개발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③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농민상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9조(소장의 직급)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화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장 읍 면

- 제10조(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각 읍·면장 1명 씩을 두고, 읍·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읍 ·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 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울력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제1항제4호 중 "농생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 ② 고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 울력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6조(제2항)·제7조(제1항,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13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임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13조(제1항) 중 "과·관·소장"을 "실·정책관·과·소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법무행정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 제11호다목, 제10조제4호, 제10조제5호, 제24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48조 제3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으로"을 "기획예산실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호다목, 제8조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8조제6호 가목, 제8조제7호가목, 제8조제8호나목, 제8조제9호가목, 제8조제9호나목, 제8조제10호,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5항, 제24조제6항 , 제48조제2항, 제50조,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에게"을 "행정지원과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제5항 중 "등재한 후"을 "등재한 후 행정지원과에 송부하여"로, "하고"를 "의뢰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은"을 "행정지원과는"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에"을 "행정지원과에"로, "게재 및"을 "게재를 의뢰하고 기획예산실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은"을 "행정지원과는"으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과,담당관,소장(이하 "소관 과,담당관,소장""을 "실,정책관,과,소장(이하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과・담당관·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과,담당관,소장"을 "실,정책관,과,소장"으로 하고, 같은 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과・담당관·소장"을 각각 "실·정책관·과·소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9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11호나목, 제14조제4항, 제14조제8항, 제24조제3항 중 "과·담당관·소장"을 각각 "부서의 장"으로 하다.

제14조제3항 중 "과·담당관·소장·부군수"을 "실·정책관·과·소장·부군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과,담당관"을 "실,정책관,과"로, ""과,담당관,소""을 "실,정책관,과,소""으로 하고, 제45조제2항, 제5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담당관,소"을 각각 "실,정책관,과,소"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담당관·소"을 각각 "실·정책관·과·소"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과·담당관·소"을 "실·정책관·과·소"으로 하고, "과·담당관·소장"을 "실·정책관·과·소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과·담당관·소장"을 "실·정책관·과·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담당관·소"을 "실·정책관·과·소"으로 한다.

- ⑤ 고창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환경복지국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울력행정과장, 종합민원과장"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 ⑥ 고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과·관·소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 "문화복지환경국장, 울력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울력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울력행정과장"을 "행정 지원과장"으로 한다.
- ③ 고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중 "과·관·소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과·관·소장"을 "부서장"으로 "과·관·소"를 "부서"로 하고,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과·관·소"을 "부서"로 한다. ⑨ 고창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울력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장·예산팀장, 다른 과·담당관·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담당관·소장"을 "기획예산실장·기획팀장·예산팀장, 다른 실·정책관·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정책관·과·소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울력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 ②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3조·제5조제2항 중 "과·담당관·소"을 "실·정책관·과·소"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6조제2항·제7조

제2항·제9조·제14조·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중 "울력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④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7호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⑤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과·담당관,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을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면"으로 한다.
- ⑤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물품운용관-각 과·관·소의 장"을 "물품운용관-각 실·정책관·과·소의 장"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분임물품출납원-각 과·담당관·소의 주무팀장"을 "분임물품출납원-각 실·정책관·과·소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물품운용관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각과·담당관·소의 장)"을 "물품운용관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각실·정책관·과·소의 장)"로 한다.

①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군수·국장·과장·담당관"을 "부군수·국장·실장·정책관·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 중 "과장·담당관"을 "실장·정책관·과장"으로 하고, 같은호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신활력경제 정책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소속 과장"을 "소속 실장·정책관·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관 직 명	본 청	고창군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 · 임시관서	읍·면
회 계 책 임 관	자치행정국장	-	-	-	-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장
분 임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장·정책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자치행정국장	시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장·정책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장·정책관·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장·정책관·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장 · 정책관 · 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팀장	의정팀장	재무업무팀장	-	총무팀(부읍 · 면) 장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팀장	-	세입업무팀장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팀장	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정책관·과 서무업무팀장	-	-	서무업무담당과 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사	네입세출외현금 실무당	남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1	업무처리

①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생명지원과"를 각각 "농업정책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① 고창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생태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
- ② 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호라목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②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실·과장, 정책관"으로 하고, 제3조 중 "상생경제과장"을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한다.
- ②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부군수"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상생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기금담당과장"을 "기금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본청 실장·정책관·과장의 직급 (제4조 관련)

직 위	직 급	직 렬
기획예산실장	5	지방행정사무관
종합민원실장	4~5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신활력경제정책관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행정지원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
관광산업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문화예술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사회복지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인재양성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환경위생과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재무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
농업정책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농촌활력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해양수산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축산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산림공원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안전총괄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설도시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별표 3]

읍·면장의 직급 (제10조 관련)

읍 · 면 사무소명	직 위	직 급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고창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고수면 행정복지센터	고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아산면 행정복지센터	아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무장면 행정복지센터	무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공음면 행정복지센터	공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상하면 행정복지센터	상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해리면 행정복지센터	해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성송면 행정복지센터	성송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대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심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흥덕면 행정복지센터	흥덕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성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신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부안면 행정복지센터	부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型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시면	법 사꾸	15, [14
	기획액산심	1. 군 평광진반에 관한 기획	
	거리에산실	2. 국정관계 대용	
	기피예산십	3 장에게박 및 집에 취심	
	거확해산성		
		4.[장씨개발과 관련된 쇼의 심사	
	기록예상성	5 월 소간업무의 기회	
	기획예산실	6. 대통령·기사·교수 계시 사항	_
	가의세산설	7. 군수공의사업	
	강희에샀실	8. 국가에산	
	기획배산성	9. 중앙부처 등 중요사업 관리	
	기회에산십	10. 지적제산권관관 양무 종관	
	기피예산십	11. 교통문 케릭터 관리	
	기파예산된	12. 등게가료하 선사·문석-공표	
	기위에상실	13. 연구분대 문제조사	_
	기회에산성	 사업체기초등계조사·광업체조업·사회자표조사 	
	기위에산설	15. 동립이업·시비스업 플로사, 산업 플로사, 인구주백을조사	
	기회예산설	[6] 통계연보 발간+행정자도 계하+행정자료실 운명	
	기비에산인	17. 선 업무 중합기획·조전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기피에산십	18. 정부 3.0	
	기복예산심	19. 그 밖의 군경기력에 관한 사항	
	기뻐예산인	20. 이 상원성	
	기위에산실	21. 에비비	_
	기반에산성	22. 에산매장계획 수업 및 매장	_
	기회에산설	23.[투자성사	
	기획해산실	24.[기급용합	
	기회에산심	25. 중기지방제정계획	
	기확예산실	25, 특명교무제	
	기회에산설	27. 지방교부대 산성치료	
	기획에산심	28. 平東司	
	21 10 10 10 10		
	기원에산십	29, 에산의 정의판리	
	기획에산심	30. 주민광이에산	
	기확예산실	31. 지방보조금	
	기회에산설	32. 예산의 이 전문, 이제	
	가원에산센	33. 지반제장문석	
	가격해산살	34. 지만재정품식	
	기획예산성	35. 그 밖에 예상에 관한 사회	
	기의에산성	35. 감사계원 수밖 및 사명	
	기회에산성	37. 本項計	
	기리에산십	38. 골부원 장계, 소기, 소중에 관한 사항	
	크뷔엑상성	39.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21취에산설	40. 항급기판 감사 수집	
	기미에산실	41. 공격자 계산등록 업무 전반	
	거리에산성	42. 공비자용리민원회 운영병 공부원생동간만	
	기비에상성	43. 군연간사관계 및 감사위원의 운영	
	기비배산실	44. 군인물변생경 인원 조사	
	기회에산실	45. 무계유판제도개선	
	기위에상실	46. 공격기장 관광활동	
	기원예산문	47. 특명기시사망 개리	_
	기계에산설	48. 상급기관 조사자시 어쨋	
	의학에닷컴	4도 상급기관 이름면원 처리	
	기계에산십	50. 미필조사 및 예방활품	
	기백예산십	5) [전략 및 단위 시간	
	21 21 11 11 11	52 4 4 4 4 4 4 4 4 4 4 4	
	전투에선함	51 7474 7873	
	기위에상살	[54] 반문에,설립경제 업무	
	그런 비의 화	55. 현상간사진병	
	2)相相對計	56. 계약성사문양	
	기배력산상	57. 법무개의 중앙자리	
	기회에산선	58. 조배-규칙이 성사 상포	3

进机	무서별	함 사꾸	用五
	기피에산선	59.[훈텔·에규 등 중요문서 설사	
	기회에산심	60. 법제자료의 조사·주집·연구	
	기리에산실	61. 자치병규의 원산	
	기파에산십	62. 소송사꾸 경토 및 통계	
	기회에산성	63 소송사건의 인터 및 자료	
	기티에산선	64. 생강성관 지도	
	기원에앉성	65. 지방불권 일부 중불	_
	기위에산실	66. 열단의신 충팔 기획	
	기위에산십	67. 证質批別 告冊 기期	
	기획에상실	68. 펜쓰실린장계 주권	
	기원예산설	69. 計劃小址支班	
	기획에산살	70.[군비회 운영지원	
	기회에산실	71, 국제임의 및 대의형의 관련업무	
	기획예산실	72. 자치단체간 자메건인	
	기회예산심	73. 국외이행	
	기획예산신	74. 골부센도조·노사형의회 업무	
	기적에산실	75. 化多州司	
		on Land So of D. Dathard of Market	
	기취예산실	76. 군장 주요업무 심사분의 및 확인평가	
	기백예산회	77. 문무한 차파막가제 윤역(BSC 윤영)	
	기의비산실	78. 전략실명제	1
	기바에산설	79.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업무 용관	
	기회에산성	4年 백정규제장비	_
	기회에산실	81. 지방자치단체 균체등록 및 관리 증발	_
	기회에산문	82. 기업 등 지역현장 구제예요 밥값 밥 제도계신	
	기위에산심	HS, 지방자치단체 규계원과 추진실적 생각 대용	
	기위에산성	84. 상위법원과 불앞의한 자치법균 등 방급 및 계신	
	기계에산십	85. 중앙무서 법령 군체계선 전의 파제 방궁	
	공합인원성	1. 인취장구분인 및 환경계선	
	중합인원성	2. 생활인원 시계 및 생활인원가능처리면 운영	
	15 17 17 17 6 16 18 10 48 45	3. 민원경수(고충·단순·복합·즉천그 밖에 등) 및 이관점수대행	
	중합인원실	4.12 m 1 m olat olatoli it al al 2 m ul-2	
	공합인원실	4. 주면상목·인감·외국인등투사성증명 발급	
	공항단인설	5. 고장군 홈페이크 만원정보센터 운영	
	중합인원실	6. 전자인원 G4c 운영(아디씨나 반원하려), 무협안원발급기 운영	_
	총합인원설	7. 미국인관인 조사	
	중합반원설	8. 두백건설사업계획 유인 및 사용중인	_
	중합반원성	9. 건축터가(신고) 및 사용증인	
	중학반원성	10. 건축공사평장 사광기도	
	중합반관심	11. 각종 건축관련 통계조사	
	중합면원산	12. 沙美小 相用電星 准备	
	출합병원실	13. 건축해집 건설과 및 건축해설정보 전설운명(AIS)	
	중합인원성	14 기방건축위원회관리	
	多格的新有	15. 건축할대상 취상및 참의	
	골 합면원실 -	16. 전속봉대상 방급	
	25 WAYD 101 AN		
	중합면원성 종합면원성	17. 동어촌주기관계계선사업	
	主 和公司员	18. 국민주백용자급관리	
	공항인원설	19. 경풍주백 관리	-
	(表彰以明報)	20. 공동주백 지원사업 조건	
	공합면원설 공항면원설	21. 건축물 부생수차장 관리	_
	중합인원성	32. 전속 입대사업자 등위 및 관리	
	공합민원설	23. 볼법건축볼 지도 단속	
	공합면원성	24. 도시주기관성 개선사업	
	상 발 반 발 성	25. 전원리를 조심제에 수립 및 사행	
	공항보원실	26. 구기급이 업무	
	중합면한점	27. 주가면용값이 주택 개요수 사업	
	20 30 32 30 30 20 30 40 40 40	28. 등이존장에인 구력 개보수 사임	
	중합인원성	WE HAVE BUILD BY MALE STRAIGHT	
	공항반원성	29. 기소학계상 면색적인 직원사업	
	공항의원성	30. 진소득계를 에너지효율계실사업	
	공합만원성	31.[이용적 주택의원사업	1

母類	무서펜	· 함 사꾸	11.14
	带放现税 领	32. 마용장비행 균공주택사업	
	중합민판실	33. 지적축량기준점관리 및 지극측광검사	
	差數也與例	34. 시전체문사 사업	
	중합병원성	35. 토지어장산성자 지적공부장리 및 토지표시면진 등기독박 36.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받급	
	중합민원실 중합민원실	36. 과적공부 연합 및 등본방점	
	공합인원설 중합민원실 중합민원실	37. 지적통계관리 및 국토정보센터 운명	
	공하비세시	38 범인 아닌 사단·계단의 등록번호부여	
	A sign at Al	39. 토지(일약)대장 소유권 변통사항 정리	
	중합인원성	10 16 21 3 3 H A A HAVE BY A OL & MANAGED	
	A. M. C. M. M.	40.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총광(서비완리) 41. 자희(일이)도 정산자료 관리	
	중합면원실	41, 자꾸(일이)도 편산자료 관리	
	중합인원실	42. 공간및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중합반원실	43. 공간정보 보안관리 44. 지하시고 운영·관리 및 계획공부 보존·관리	
	중합단원실 중합민원실	44. 지하시고 운영-관리 및 계획공부 보존-관리	
	중합면원성 .	45.[지탁자문 및 작가기운학양원표 조사,관리	
	증항면원실	46. 도로막 주소부여 및 활용치원	
	중함민원성	47.[개념공사격가 조사 및 운영	
	중합인원실	48. 교장군부동산가격공사위원회 운영	
	중합인원성 중합인원성 중합인원성 중합인원성	48. 교환군부동산가격공시범관회 운영 49. 개별꿈시지가 평설 및 이의선철 전리	
	중위인원성	50. 계방이의한수계 운영	
	급박면원실	51. 개발부탁급 부사·경수	
	45 (0.10 for for 65.	52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表示可处处 表示可处处 表示可处处 多可可处处 多可可处处 多可可处处 多可可处处	53. 토지이용계획 확인된 방급	
	一 東京の町点	54. 부용산중개업소 지도 한국	
	2 2 7 7 W W	24, 7 8 (1 8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3.31.67.43	55. 부동산설명제문영	
	- 항상인원일	56, 토시거래규제	
	출발 범위성	57. 개발규식자가락인원 발급	
	중합맛원설	58. 부동산거래계약서 경인	
	중합면원실	55. 부등산실기에 업무 편반	
	중합면원설 중합병원설	60.[부동산거래장리시스템(RTMS) 윷윙·짠耳	
	중합민원실	61. 부등상 거래관인 파테르 부과·경수	
	중합면원설	62. 외국인 로지관리업무 63. 무통산중합문부시스템 운영·관리	
	중합인원설	63. 부동산중합류부사스별 훈영-관리	
	중합반원실	64. 개반책위 신고이가 및 지도감독	
	एक्ष्य व स्था सम	1. 과 업무 증합기획·조절 및 예산리계·업면서부	
	선명하건세상세관	2 설명대편 중함기력	
	산분대기세상세선	3. 노계업무 및 노동조화 건전육성	
	선활력합체장배란	4. 작업소계소 제도 감독	
	ंसन्य प्राप्त	5 공공단로사업 추천	
		G Jalud H ot granned of	
	선확여성제되지만	6. 강년취업2000시업	
	선왕의경제장의원	7. 일자리전원센터 및 전망검보센터 운영 등	
	신발티경제장의관	표 영가리공시계, 귀여양함별 지원사업	
	의원력경제경제관	9. 지역규동계 일자리 사업 추진	
	진관리경세정의번	10.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업무	
	전환력장계계계판	11. 마음기업, 마음공항, 마을꾼동네 사업	
	신환역장세정세반	12.[정년캠프 관련업무 원반	
	신환의경세계비원	13. 항임 관련업무 선반	
	크림력경제중계반	14. 관내 기업인 새로레소대의 수입	
	신환력경제정비반	15. 관대 기업세 산업인의 우급 대책 경구	
	त्रवयवववव	16. 출소기업욕심기급리법	
	신환력장계장여만	17. 선도기업 및 유명중소기업 자성 지원	
	त्राच अवश्वता	18. 투자유의 활성화 중합대체 수립	
	11원의 발표발에 A	10. 국내의 기업 휴차	
	선확의무세상시합		
	난항하상제안의자	21. 동생단기 시설 용게 반리	
	선확적권재정적권	알 농장난지 일주 책임	
	98434584	21 신규 동풍단계 조설 및 본밀	
	선활이상되신의선	24. 장성사업체학 중인 및 관료하고 거리	
	선판력인세인배함	25.[공장성업 습인 열 편료신치 처리	

珊盟	부서별		웹 사무	H.15
10.00	권환하건계성제관	26.	이전기업 자원 및 관리	
	신함백진속일세반		투자유의 설명의 개리	
	산환배 반세 반세 반	28.	기업유치관련 정단인원 처리	
	선활력경제성제관	29.	지역경제 활성화대체 추진	
	· 기취대급과경제된	30.	지속업무 및 급취 지원 지도/ 감독	
	法保持用项目明确		삼가관리	
	신합의장계계리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성환미경제임적관	33.	통신,방문관에임 관련 업무	1
	상황역강제장되린	34.	공산품, 원산지, 위조상품 자도·갈목에 반한 업무	
	실활력경력정력원	35.	명시합, 독권입 관련 압부	
		200	당배소에임 관련 업무	
	经报明分析性利性	30.	Hadale also wall that also also	
	선활박경제정의원	37	과학기술 권통육성에 관한 업무	-
	선정비장세정제관	38.	시장시설현대학 사업 및 활실화 사업	
	근원하십세막지장	39	권통시장 관리 및 시원	-
	선활위경제경제관	40,	상인의 및 대규모 집모에 관한 업무	
	신환적경제임적원	41.	소성공인 지원 관련 업무	
	실합리장계계부만	42	BUY 전북 관련업무	
	선활력경제경제원	43.	부등목 제조업체 파악 및 등록주진	
	- 단황의 경기 기계		핵화석류가스 인·편가 및 관리	
	선환대장세일적단	45.	고합가스 인-해가 및 관리	
	신항력경제설계관	46.	도시가스 공급주권 및 관리 석유판매업 등록-성교 및 관리 제방기 검사 및 관리	
	선활대학계개세년	47.	석유판매업 등록-선고 및 관리	
	선활력정체정세반	48.	제평가 취사 및 관의	
	선밖에면비에게세선	49.	선 계상에너지 관련업무	
	선활약장세정세점	50.	지역에너지 관련위부	
	선판학학자학학	51.	연판의 업무	
	선활력상제정위관	52.	원기의씨·	
	살뜰학생학생적관		식인한 제조업 관리 및 자원 업무	
	산왕의경제기계원	54	농어촌 전기공급 관련업무	
	신용대장세장세상	55.	장합된 성명 공약합의 업무	
	95004849	56.	산립단계 조심사업 건강인가 업무	
	실환력기계상적관		사후환경 얼룩생가 실시(개발 중, 개발 후)	
	The second of the second secon	117	아 도 있다. 보고 있는 이 시간을 하는 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판적정세상적관	58.	산업단의 개발계의 관련 중앙부처, 도설 및 유관기관 협의 영무	
	电影解析用的情况			_
	신험트로세정부산	662.	산업단적 내 영웅보상 형의 업무	-
	한번의 경제정계관		산업단의 관련 주민 동합 및 말원에게 업무	
	신원에 가게되세요	62	산업반의 단계별 준공, 정산 및 시설품 안계, 인수 법부	_
	선활편경제정제관	635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방 업무	_
	선확력전체형제판	64	산업단의 권용 전법도로 개설 사업 공사 업무	
	선활력경제정책반		산업단지 문쟁 관련 행정심장, 소송 등 흡사업무	
	신왕의경제성비반		석본자학화공공단계 시설유의 관리	
	선확여성세상세단		복문자복화농골단시 키업유치 및 공장등목	
	신환력성세정되다		노읍대교 건설	
	신황하정체정치단		인계 교통막 구축	
	신환력경제정의관	70.	전략에너지4자산업클러스타조성	
	선확여성세계계관	71.	생대사합관광기조성(실원업권)	
	선활력장계계계위	72	노유권망에 설계	
	선택원경기전에인	73.	서유생대관광활리스터 조성	
	1000000000		서해안 위도 국가계하면의	
	산환력검세장의관		고립사랑 기부계	
	802480040		선구함세	
	스타리산세정의원		관계인구 설계	
	4 6 4 3 4 5 4 5		지역대 중 병선	
	and the state of t	1124	사기에 등 있다. 본성 - 리속기관 - 사업소 - 집 - 번 계보 - 합의	
	행정지원과	- 5		
	생성지원과		기반광선 수성	
	频성자인과		주민의 마세미 요양하세	
	0 생 생 생 생 생 생		반상의 운영	
	백정자판과	- 50	백정실의 중앙반각	

绿姐	부서별	형 사꾸	14 33
	행정지원파	6. 작중위원회 관리	
	생정지원과	7. 의역이본관리	
	량정지원과	8. 사회장사면링 캠팽	
	행정지원과	9, 고장비전다장이날, 시부석, 공부석 분역	
	해가라네뷔파	10. 상목회(석당: 매취)운영	
	에정치위기	11. 전장광고 운영	
	행정지원과	12 기록관관리	
	機정지원과	13. 행정시 업무서리	
		14 문제로 바이 제 기계	
	생생기원과	14. 공인등록 및 제기는대상장리	
	행정자원과	15. 군수,부군수,과·관·소장,육·변장 사무인계 인수	
	생생지원과	16. 군 산하 광무센 부무관리	_
	생기시원과	17. 남작운영	
	변장자원과	18. 선기 및 주민투표	
	행정지원과	19. 해장구의 개편 - 광의해정	
	큠궏지판과	20. 생각서비스인상 휴립지도 참목	
	행정기원과	21. 시간·군수 정체협의회 22. 군민의장	
	행정지원과	22. 군민취장	
	생장지원과	23. 회의점, 당활설운영	
	행정자원과	23. 회의점, 당황설운영 24. 임계강권의 피해조사 및 접수 처리	
	생장지원과	25, 과거사 선상조사 및 접수 처리	
	행정기원과	26. 证 3 시 明 收录 划 季甚	
	행정지원과	27 条件기件分表計劃 化增	
	행정지원과	27. 유관기관장 간당의 운영 28. 군 본장 및 산하기관 필무경영	
	0 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9. 세외군인의 및 향우의 관리	
	생성지원과	20 전에 가는 하는 하는 사람 사람이 아이들의 함께야 되는 사람	
	방점직원관	30. 라반소공, 유민장 등 작중간부회의(주관,월급업부 등) 지원	
	행정의원과	31. 주민과의 대화 문입	
	세정지원과	32 군 산하기관 세국기 관리	
	백성개원의	33.[공부원 후생회자	
	생성지원과	34. 백정정보공개 점수 창구 운영	
	세정시민의	35. 세마을운동고장군칙회, 바르세살기고장군형의회등 관련 단세 위무	
	백장지원과	36. 현심자 회미수남	
	#장점생과	37. 송년 및 새해 맞이 해사(해념이, 해탈이)	
	백정시원과	경토타 부사에 속하지 않는 법무	
	반장지원과	3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종판	
	해정시원의	40. 골부판 입용·경제·소청 입부 첫만	
	팽장겨린과	41. 인사(장계)위원회·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推设风景湖	42. 공부원 근무세계 및 성과상이급 세도 운영	
	생성지원과	43. 공부원 훈·포장·표강	
	생성적인과	43. 공부원 훈·모장·표함 44. 공부원 교육·문헌	
	행정치원과	45. 끝부칙근로자 제공 및 인사, 기간제근로자 제공 협의	
	행정지인과	46. 기구·장인 및 조직관리 업무	
	핵심장했과	47. 기준인진비계 및 제가영향분석 관리	
	행정지원과	48. 자자단체 기구·인력 모델설정 및 증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행정지원과	49. 인사행정기보시스템 연계 관리	
		90. 전작용성 5보스는 및 인계 있다. 50. 공무위 연급 및 대한지방에질경제의 업무 전반	
	생성지원과 배기기의 대	다. 사가의 전에 에 에 에 가게 되어 해야 되가 있었다.	
	펜겠지만과	51. 공무의근로자 및 기간제군으자 퇴관금	
	엑기즈왕관	52 4대보험 관리 (국민건강보험 : 교육보험 : 산제보험 -국민민급)	
	생생지원과	53. 프랑이앙주진위원의 업무선만 캠핑	
	생정의원자	54. 교정공료계획 수업시설	
	# 개의전막과	55. [홍보자료 수집-제공 촬영	
	행정지원과	56 후보에게에 보관·육성	
	행캠기까게	57, 군보-교장 신문 빨간	
	생성지원자	58. 국계역부에 관한 총보	
	생성적세계	59. 국제합의 및 대의합계관관 종료	
	바게지원하	60. 공포·광고 업무에 관한 사망	
	변경자인과	61. M.E.4.0. AM	
	생생생생기	62 한국자에선을 제당 운영	
	44444	63. 그 밖의 균 성공보에 관한 시장	

岩型	부지별	웹 사무	11/27
210	행정지원리	64. 정보통신 중합개밖계획 수립 및 시계	
	행정지원의	65. 생경증합정보 고도화사임 및 전자인원서비스 자원	
	행정지원회	68. 지역장보파폭진사업 발굴 및 추진	
	행정지원과	67. 정보의 마음조선 운영	
	배정지원과	68. 계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주진	
	현정지원과	69. 전자문서, 문서유통시스템 운영 관리	
	백정지원과	70. 행정전자시명 운영 관리	
	백정지원파	71 인터넷 홈페이지, 웹메일시스템 운영	
	행정지원파	72 공부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주진	
	행정지원과	73. 에정원산장이 및 임무용 S/W 보답관리	
		73 W 2 TO 2 T 3 H T B OW A H T D O	
	뱃장지원과	74. 문항기반시스템 구축 및 오염관리	
	생각건됐족	75. 무선별 경보화사일 업의조경 및 기원	
	행정기원관	75. 보사관성기를 이용한 문서자부 처리	_
	했장기웠과	77. 본창 용항시설 및 욕의해사용 방송기기 관리 및 운영	
	행정지원과	78. 정보통신통합명 문명에 관한 사람	_
	행장계원과	79. 행정정보중선시설 및 회선 유지관리	_
	행정시원과	80. 통점 및 파먹중교속말 구축확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81. 정보품신 반원사무처리	
	생생기원자	82. TV단시장 배소 관련 업무 중계	
	행정적한과	83. 군정 홍보를 위한 건강한 운영	
	確정치원과	84. 교환성 및 페스설 운영	
	해정지원과	85, 데이터기반백점 업무주관	
	배정지원과	86. 공공대이터 발굴, 개발, 품질관리	
	병경기원과	87. 공공화이파이 구축 및 운명관리	
	행정지원파	88. 영상화의시스템 유영관리	
	생성지원과	69. 영상정보기리 취망관계센터 운영	
	생정지원과	90, CCTV설치 및 유지보수	
	행정자원과	91. 영향정보 보호 및 보안대계 수위	
지원했겠죠	관광산업과	1. 被收收在 月長州市 全報	
자치별정국	반광산업과	2 한장상품개발	
파치했장국	관광산업파	3. 관광객 통계 및 모니터링·관광안내·관광적 유기에 관한 사학	
자의해결국	관광산업과	4. 관광진흥업에 의한 업체 등록-지도-관리	
차시에 함류	관광산업과	5. 국내의 관광전·설명회·바람회	
자치 행기 후	원생산업과	6. 관광숙박업소 관리	
자기생성공 자기생성공		7. 관광이행사 등록 및 관리	
	찬쌍산업과		
자리생성적	관광산업파	8. 대표속제(고장모양설계) 주건	
자식백경국	관광산업과	 회의축제 평가유의 및 고장군축제주전위원의 운영관리 문화관광배설사 및 통역안대원 운영관리 	
자사병장국	관광산일과	11 전 제이나는 등 요하기의	
자목별장국	판매상업과	11 관광안내소 등 운영관리	
자시생기국.	관생산업과	12 인육 및 전통엣기리 매일이를 관리	
격취병생품	관광산업과	1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자자병하다.	관광산업과	14. 완꾸홍보(평포이 등) 및 관광마케릭사업 추정	
과사백자급	반장산업과	15. 시남편 관광생점 혐의의 공동사업 운명 16. 유원시설업 및 기타유원시설업 관리	_
자치팬정국	판광산업가	16.[판꿨실성의 및 기단주었실성의 관련	
자치병개국	환계산업과	17. 전라북도시골마음국제 및 무장류실 국제 주진	
자개 행정국	관광산업과	18. 관광적 수용대세 계선사업 주전	
对河州州帝	판판산업과	13. 원장인내체계 구축격원사업 추진	
자기변경국	관광산업과	20. 바이스산업 및 헬니스 관광사및 추권	
자치웹함류	관련산업계	21, 대세유의정시회계선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2. 스마트린과 사임주권	
과비행정국	관광산업과	23. 관광개방사업 캠피수입	
과지혜정국	감세상업과	24. 관관개합 관련사업 전반	
과지배양궁	관람산인과	25. 현광의 가장 및 조심계의 주선	
자치배정성	관련성업계	26. 전 바꾸원화사업 주 전	
자시행정국	· 항제산업과	27 복통자유원지 예방 관리	
가지에 발표	관광산업과	28 학장은 한 관계의 개발: 관리	
자기에 성공	관관산업과	20. 세계문화유산 교인들 및 바세계계 수집	
CENTRAL MARKET	관광산업과	30 세계분하다선 11인을 보존한테	

母型	부저별	팀 사무	11/32
자치해평하	관광산업피	31. 세계문화유산 교인들 학술사업	
자치해정국	반공산업과	32 세계문화규산 고인을 환용 및 종보	
자치행정하	관광산업과	33. 세계분하유산 도시험하여 및 도시기구 업무추진	
자의세계국	관심상업과	34. 교민들박물관 국가위속문화계 보관서 운영 및 관리	
자시백경국 -	관광산업과	35. 교인을박물관 내외부 전시 및 관리	
		22 TO V St O Shiple Ship Man	
자치케킹국	판매산업과	36. 고인물공원 경비에 관한 사항	
자치책정국	뿐광산업과	37, 교인등등원 유행시설 판리	
자치병광국	관광산업파	38. 고인문공원 및 고인들마품관 운영 및 관리	
자치ਔ장국	관광산업파	39, 고인돌공원 탐방객 관리 및 청서류지, 입장료 정수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0. 국립선사세팅아를 운양 및 관리	
자체생정국	관광산업과	41. 세계자인유산 고장갯벌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깨장하	관광산업의	42. 고장갯벌 세계유산지구 지정	
자치배정국	과학산인계	43. 세계자인유산 고창켓만 모른관리 활용 실대 원감	
자치에정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	44 /켓병 세계자연유산 보관본부(자약센터) 건립	
2018317	25.20 (2.3)	15 Label and A. C. Harris and A. C. Harr	
자시백장국	관광산업과	45. 세계자인원산 교장생성 보급관리 사업 조건	
자계행정국	관광산업과	46. 세계가인유산 고장갯벌 종보 및 활용 사업 주진	
本作业作品	반장산업과	47. 큐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업무	
対対循環体	관광산업과	48. 세계유산 관련 위원의 운영	
本対視対策	관광산업과	49. 관리계획 수립 및 방급하세 추진 및 관리	
지의행계국	관광산업과	50. 로고 관리 및 브랜드 탑용 사업	
자의 행정국 자의행정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	51. 학내의 네트워크 형력사업	
자치해정국	관광산업과	52 MAB한국위원화 및 유네스코한국어관의 업무함의	
2 2 3 3 3	40 30 31 M 31		
<u>라지배개궁</u>	반광산업과	53. 경기생가 업무	
자치병계국	완개산업과	54. 관리위원의 구성 및 운영	
과 첫 핵 경 등	문장산업과	55, 5개 행심지역 학습군사 및 모니터팀 56, 생물권보건지의 주민교육 사업	
과치행정국	관생산업과	56.]생물권보건자의 주민교육 사법	
자치병생국	관광산업과	57.1색삼권보건지역 하세교육 리위사업	
과치향경국	관광산업과	53. 생물권보찬자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자비행점국	판광산업과	59. 현재습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자착백개국	관광산위파	60. 민간팀의체 지원사임(사)고장군생대환경보진업의회)	
자치병장국	20 40 Al-04 26	61. 기타 생태용보와 관련된 업무	
71 51 MB 30 25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	62 기타 생물광보전격의 보건/발전/자원에 관한 업무	
자취했게 하	47.31.77.46.57		
자시행정목	관광상업관	63. 운착습지 생태판망지 조심산업	
자치짼정학	관광산업과	64. 유네스코 세계자결공원 인증 우전	
자치병실국	관광산업과	65. 운격습자 보호계약 관리	
파치행정국	환평산업과	66. 인원강 하구 습지 보호지역 관리	
자의행정국	반량산업과	67 등립지수지 국가생태문화방방보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BB 노동지수의 국가생태산화밥밥도	
자비행정국	관생성업의	69, 인천강 범마위 국기생대문화합반호	
자서행정국	관생산업과	70 윤목습지 국가생대문화발방로	
		71. 전사문화 국가생태문화탈밥로	
자치 방경 작	관광산업과		
자기벤정국	관광산업과	72 예차원리마실길 관리 및 운영	
자리해정국	판판산업과	73. 전복 1000리핀 활성화 사임	
자치배레국	반방산업과	74. 고창생활권보전계약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자개택제공	판생산업과	75, 고장군자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자의생경국	관광산업과	76. 인원강 기수역 패손과 북원사업	
자세텔전국	판광산업과	77. 앞사르습격도시(윤곡) 업무	
자시행기국	관광산업과	78. 고장운곡습지생대관광합의회 운영 지원	
자치배계국	현광산업의	79 습치보호기에 주면 이번 강화 사업	
자치병계국	- 항상 상의 반	80. 자연판경예실사 및 예쁘메니까 운영 개원	
각기병각물	관광산업과	81 문과급의 생태관광지 자장 육성 사업	
과상생태를	관계상일관	8일 문꾸奋시 뉴스포스텔 관리 및 문업	
라지행상류	관광산업의	83. 운꾸습지 팀방영의 권리 및 운명	
对领债排除	선명 산업계	84. 온국습지 생대세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자시행계국	관광산업과	85, 문꾸슴지 생태공반 관리 및 소약	
의 계 배계 때	관광산업과	86. 국가의공공인 방법기반구속 표석	
자기생각국	전환성업계	87 국가지점문반 바리 및 후에	
	관생산업과	8표 여명중인 교리는 세월 프로그램 개성 및 유연	

母姐	華母姐	및 사무	11] 25
지세행하다	반광산업과	89. 지오트림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자치생절국	관광산업과	90. 지정공반 홈페이지 관리 및 운명	
지지행정국	관람산업파	91. 지권공원 배설사 관리 및 운영	
자기생권국	문파예술과	1. 국·과 역부 중합기과 조절 및 예산하게·일반서부	
자의생명국	문화에운과	2. 문화계 보존장계 수립	
자치병생각	是如何全功	3. 문화계 지점·배계(국가지점, 도지점, 함토문화유산 등)	
자차행정국	是專用資料	4. 문화계 사업조사(학습연구용의 등)	
		5. 양트문화위산 위원회 운영,관리	
과치槽정국 자치槽정국	문화제술과		
사기까게지	문화에슬관	5 무장형 판안와 유성 유직관리	
과치행정국	문화예술파	7. 문화재 지점,보호구역 제초관리	
자기병경국	문화에송과	8. 장요목조산화계 안민장비인력 윤연	
자치해정자	문화에숫과	9. 문화제 특별관리인력 운영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0. 무명문화계 보관 및 보호관리	
对判划引任	문화예술과	11. 무립문화계 중계행사 및 천수활동 직원	
자세분경국	문화예술과	12. 항교 일요학교·석선대재·기로인 지원	
자치병정국	문의세술과	13. 매장문화계 부터가 방굴 및 반습생위 단속	
자의해정국	문화예술의	14. 전인기념문 보호관리(동물)	
자치행정국	문화에술과	15. 원인기념을 보호관리(식물)	
자시센계국	문화예술과	16. 문화재지역 등 불법편상변경 지도감독	
자리생경국	문화예술과	17. 문화계 대해업 허가 및 자도감독	
		18. 예상문화계 보존 관리	
자자병장국	문화에술의	10 14 3 2 at a 2 C - 41 at	
자치배정국	문화예술과	19, 목관계 발로조사	
자치행정국	분화예술과	20 [전통사람 전쟁-해계	
자치평광국	문화예승과	21. 비지정문화제 조사·관리	
자치했건물	문화예술과	22 문화계 현상편광 등 인·허가 업무	
자자평광국	문화예술과	23. 고향하시 운영 판매	
자의했십국	문화예술과	24. 고장음성 관람료·주차료 접수	
자원생생목	문화예술과	25.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 지원	
자시배계국	문화예술과	26. 문화제 등불시엄	
자치생절목	문화에슬과	27. 건축·개발뿐위 등 인·허가 관련 중화계 입부	
자치병방학	문화예술과	28. 문화계 환유사업	
자치생성국	문화예술과	29. 돌아놈만마면 유력지 정비 및 시설 운영 관리	
자지행정국	문화예술과	30. 동학등반여병 독무대상체 운영	
파티에게국	문화예술리	31. 문학동민이명기설생사	
지작행기국	문화예술과	32. 돌아놓면하면 정신선양 및 학습권류	
자시 변경로	문화예술의	33. 상학원수관 운영지원	
	문화예술과		
자치병접공		34. [지역 문화예술 기본개최 수립 35. [함파예술(4명, 비술 유학 부분, 전략, 임리, 전력, 전력, 전략, 전략, 임원, 전략) 당본 유럽	
자치행정국	문화예술파		
자리벤정국	문과예술과	36. 시의문화권용계계 수립 및 시생	
작성생성품	문화예술과	37. 문화콘텐츠 산업위설	
작성병장국	문화예술과	38 [작의문화예술자, 행토문화 시설 및 유격 관리	
자계생광국	문화예술과	30. 문화원, 관리에송(분인업회, 국가협회, 미술업회, 음악제회)고장적회,문화에술인의 중심화	
차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0. 음악산업, 계압산업, 평화 및 비디오에 관한 사람	
가지생정국	문화예술과	41. 안쇄상업, 출판문화산업, 기작관에 관한 사항	
자자체절국	문화예술과	42 작은영화관 운영직원	
자치병생목	문화예술과	43. 문화복지, 지역문화(생활문화, 문화도사: 지구 육신)활선화	
자기배접목	문의에슬과	44. 고장마 정립 업무추진	
자시행정국	문화예술과	45. 생활분화생터 운영의원	
자비싼정국	분하에슬과	46. 전통사항 보수·정비	
자시해정도	문화제습과	47. 중요꼭조문화계 방계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자시행정국	문의에소가	48. 항도문화유성 보수·생미	
자시에 발식	문화예술과	49. 무상이 전하여 옵션 복린	
자시해생수	문화예요과	50, 문화계 제단 계례관리	
가비행제국	상자에요게	51. 문화계 전명 보호구역 토거래의 및 관리	
자식하게되	문화배출자.	52 문과계 안내표기를 설계	
자사백경국	문화에요파	53. 문화에 보면-참비(학가기점, 모기점)	
到為州州選	문화배술개	54.] 문화계 중합성비계의 수업 및 가득하 정말성학	
자시생성상	문화배함과	55.[고장 문제리 설치요지 절비사업[문화유적공원 조정]	

母性	华州県	및 사무	비교
本封领用证	문화에슬과	56. 고장·무장중심 방재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작사생성국	문화예술과	57. 공학동민의명 설지화 사임	
지비했정국	문화에술과	58. 공공도시관 신축 및 리모벤텔 조선 등	
지지배정국	분파에술과	59. 군립미순관 전립	
자치생광학	문화예술과	60.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 목충	
자의 행정국	문파에슬의	61. 군립도시판 운영관리	
자치책정국	문화제출부	52. 설로도사관 운영관리	
자의행정국	문화예술자	63. 작은도시관 운영관리	
자치백장학	문화예술과	64. 선운초식문화관 시험관리	
자치했장국	문화에술화	85. 미당시문학관 시설관리	
자기생정국	문화애출파	68. 등리 선양사업 및 판소리 육설	
자위해경국	문하예술의	67. 둘리국악당 운영 및 관리	
과지배경국	문화예술과	68. 관소리전수관 운약 및 관리	
자시행정국	문화예술과	69. 문화의 전망 운영 및 관리	
자치해장국	化中间企业	70. 관소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자의행정국	문화예술과	71. 장소의, 시청주 생기 및 전체선 생기터 관리	
지지배경국	문화에슬파	72. 아이전통문화공간 시청관리	
보차#정국 -	분화예술과	73. 환경생태공원, 분수대 시설관리	
자의생활학	사회적기과	1. 보훈업부(보훈단체, 보운행사, 현충사성 관리 등)	
자시해정국	사회복지과	2 흐뭇보충수당 지번 및 관리	
자기배장(국	사회복기과	3. 텔리가 관리 및 부연고사망자 장계처리	
자시에게 국	从自然内断	4. 세매구호(구호급류 및 암시주거시설, 전유인력교육)	
자치행정국	사회생사파	5. 차환자원계획 수임, 시생	
자치생성국	ASMAA	6. 차형사임 및 기의차활했더 격원 관리	
자기생성국 자기생성국	사회복지되	7. 사회복치기급(자판기급, 사회복지장막기급)	
파기 변경 다. 파기 변경 다.	小田州田山	8 사회부지시설 및 병인 중심	
지지배경학	사회복지과	의 군연중합복사회관 운영 역 관리	
하기 W 의 작 차의 행정국	小姐帮利益	10. [시역사회서비스 부자사업 취임 시행	
경기까지하	ANNAN	11. 사회복지진단체계 운영지원(교육 및 사회목지건답공투원)	
자기까지 기기 자기까지국	사회부지의	12. 사회복무료원 관리	
지지 방향수	A) 01-M 21 25	13. 의학인 환편 업무 충판	
파지행정국	사회복지과	14. 사회사비스원 관련 업무	
하기 생성국	사회복지과	15. 중호의 지원	
おお明古宝	사회복지피		
선선생님도 사위생경국	사회복지의		
		17. 코로나19 임원격의자 생활자원비 사업	
자치 병접 국 지지 행정국	사회생기관	18 과 업무 강합기계, 조절 및 예산회계, 원반시부	
	사회복진관	19. 면서의 작은 목욕함 운영지원	
자시생각목	사회복기사	20. 면지의 공공들레터 운영자원	
자기까게로	사회복지계	21. 불아가는 보건부지선명은 배면 수입 및 제가	_
자기배기국	사회목지와	22. 구민생활현장의 공표선비스 연계장과 사업	
자세뱃장국	사회복지과	23. 전역사회학기정자 용환	
전의 행정국	사회복지과	24. 지역산회사장계의 수립 및 제가	
자시행당국	산활물건관	25. 주민주도 마음복자계획 수립 및 살세지원	- 1
자기까지곡	산회복진관	26. 지역사회보장임학체 운영	
작산생경궁	사회복지과	27. 이웃뮤기(연락엔시 위문규 모규 봉)	
지세 배명국	사회복지과	28. 자원봉신	
전의행정국_	사회품계관	29. 자원봉사센터 문업지원	- 1
자시백경국	사회복각과	30.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 업무	
자치까지리	사회복하게	31 자상위계를 및 사회계약계를 파면	
하시겠지점	사회복지과	32. 불합사례관리 및 경공부문 사례편리 전계합의	
작전생각품	사회목지과	33. 화망부지의원단 및 찾아가는 보건하고서비스	
자리회장 중	사회목계획	34. 복의자원 관리 및 발간서비스 현계	
자시형광주	사퇴목자파	35. 시역보호세계 운영	
四向排車等	사회하지과	36. 요면 복게사업 적원 및 관리	
对价价价	사회중점과	37, 건규지원, 129분센터	
자시생경자	사회장치자	JB, 위기가구 배굴 및 작원	
파계생생님	사회복귀화	3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과정협공문	AFBEK XLIP	40. 말중필급이(목의뱀비심) 운명	JULU

국별	무서변	표 사무	ग्राम
자의평광국	사회학자관	41. 복지급여대상자 선명조사 및 사꾸관리	
자치깨장국	사리복지라	42. 기초생활수급자 등 목지급이 지급 업무	
자시 배정국	사회복과과	43. 기조생활보장사업 및 생활보장위원의 구성 운영	
자기생강국	사회목적과	44. 미료급이 수급권자 관리 및 미료급여폭발회계 운영 및 관리	
자치해정국	사회중지파	45. 의료급이 사례관리사업	
차비행기국	사회장기파	46. 위로급이 현급급이지원사업	
과 게 됐 참 다.	사회복지과	47. 의료급여 중증 및 하귀난치성 질환자 등 산정부레 등록 및 관리	
对风塘水 量	사회복지와	48. 의료급여 상반일수 관리에 관한 업무	
자의행장국.	사회하기관	49. 이료급이 시추관리 및 권역구세에 관한 업무	
사시에 강국	사회복지과	50. 노인복지 정배 기획	
자치행장국	사의적기과	51. 고장군노인복지관 운영 계원	
자의행정국	사회취직과	52. 대판노인의고장군지의 지원관리	
취치행삼국	사회복시파	53. 정보당 운영 자원	
지계했정국	사회하기과	54. 기유방규사업	
자시생성국	사회사자과	55. 노인맞춤작용서비스사업	
지시행방국	사회자기파	5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체했정국	사회체제하	57. 노인장기요양요형계도	
자치행함국	小司从对政	58. 고장군추모의집 작원관리	
中间侧沿岸	从到前均率	59. 고장균중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자치팬정국	사회복지과	60. 교장군노인요양원 직원관리	
지지배광국	사회복의의	61. 노인하다 에이 교육 및 인권교육	
과치백정국	사회사격과	62. 전히 우리 노인 무료급의 적원	
사회생성국	사회사지과	63. 노인교실 직원관리	
파이 방향국	사회하지의	64. 노인 전 한번 단시 및	
자기생성국	사회복기와	65. 노인복기관련 범인관리	
자리행정국	小的特殊对	66, 노인복지(주기, 의료, 내가)시선 의원관리	
라치생권국	사회복지리	67 독개노인 공중 발항품 서비스	
자치행정목	사회복지과	68. 지연장 설치·조성 및 운영 기원	
파이 생성하	사회복지과	69. 고형자꼭지구백 관리	
자시캔전국	사회복지와	70. 100세 어트산 만수무장 축하지만 사업	
자의행정국	사회복지과	71. 이비야 남, 노인의 날 및 장로의 탈 행사	
과치생각국	사회복기가	72 독기노인 장에만 응급안전안성서비스사업	
과보생명적	사회복지와	7일, 이트선 이 미불비 시원 사업	
파비행정하	사회장치계	74. 기통불편 이트선 보백보조기 지원	
과처형정국	사회복의과	75. 장사장의 추진 및 행정기관(공설,공동보기 관리, 상법보기 만속 등)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6. 소나무 청춘꿈밥 운영 지민관리	
자치병결국	사회장의과	77.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자치행정국	사회생각과	78. 정보당 설치 및 기능보장 사업	
자의생성국	사회원의	79. 성종노인의 방생에방 및 환기 사업	
자의생생각	사회생지의	80. 노인복리기급 운영관의	
자치했장국	4) 회사 지과	81, 노인통합등용사업	
자기생성국	사회생자과	82 장에인복자사실 지판 및 관리	
파의행정국	사회하고의	83. 장애인등록관리 및 관련 목지입무수건	
자기생님국	사회전계계	84. 장에인 단체 운영 각원	
사치했건국	사회생기의	85. 장애인 차립차급	
자시행성국	사회사기가	BE, 항해한인 차리 사임	
지기생성국	사회장의과	87. 상에인 항문지원 및 상에이 문제함처로	
파워행정국	林斯林中斯	88. 장에인복자관 운영관리 및 추진	
파티센포트	83.00 20.00 20	89. 상태인주간으호시설 운명관리 및 주권	
자의생생각	ANDMAD	90. 장애인적업적용충린시설 운영관리 및 추진	
자시행정국	ALE REAL	91 상태인보호학업장 운영관리 및 추진	
자치행정수	机组织制制	92 상에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자시생명국	사회사자와	93. 장에인을 편의증권 관련 사업	
可可以可能	시의세크레	94. 상에인 글이 대상지 관리 및 개위	
지시했건요	사회복칙하	95. 장에인 계활보조기구보급 및 관리	
사사생성국	사회하지라	96. 성학인 의표비 시세	
자기생성도	사회하기의	97 이성장에인출산비용지원	
고기 방생물	科斯技术部	1대, 장에이불가족지원사업	

守世	부서민		형 사무	利丑
자희행정국	小型被河畔	99.	반단장에 인기원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장에인 자동차 표지 방급 및 관리	
과기행정학	인계양성과	1.1	장하계단 및 장하숙 관련 업무	
자리에성국	인계약성과	- 3	가 중고 학교의 지원·연계 사업 추진	
자치세정국	राजान राजा	- 3	전투대학교 교원캠퍼스 관련 업무	
자치에 생각	인제안설바	77	농생대과학과 등 인력양성치원	
			항기계속하면 한 점을 받고 있다. 이 대하스 역의	
작의했건국	인백양심과	- 5,	제생의속 작전	
자의애정학	안책임세과		교양감과 운영	
자취에겠다.	인계당성파	7. 8.	전망장학교	
자치 빨경국	인제방생과	- 8.	이성점째 기획 수립	
자기 배광국	인패당성과		가족센터 운영관리, 다분하가정 지원	
자치생정국	인백양성과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기방광국	인계안성의	11.	반부모가경 지원 반의	
자기해정국	인계당성하	13.	이성병생교육 및 여성화관 운방 관리	
자치생성국	인계양성과	13.	생임세터 지원 관리	
자치배경국	인배안상바	14.	성병명합리가 과제 추진	
사이 병생 다		1.40.1	3 0 0 0 0 0 1 7 1 0 T 1	
자기세정국	원쾌앙설박		가정목막,성목력, 성희용 관련업무	
자시배경국	인계양정파		양성병등기단 관력 운영	
자치행정국	인계양성파	17.	이성단체범의회 사업 지원 관리	
자치배정국	인계양성과	18,	여성진화도시 조성 및 가족권화인증 권리	
파계생생학	인배항성계	19.	아동지박안대	
자치색장국	인계안설의	20.	아마돌보며 지원사업	
자비배광국	인계양성과	21.	트립스마트 운영 및 작원	
자기생정학	인계암성과	32	아본 단권 교육 복지 프로그램 유명	
자시해정국	인세양성파	23	취약계를 아동 반균 및 서비스 연계 취약계를 아동 불합사례관리	
파비팬게다	인계양설계	24.	20 4 5 of 5 8 0 Calvel	
2049	인계약설파	25.	차원밥궁 및 현계	
지치를 등록	인제양성과	26.	아동선당 지판 마동선당 지판	
자기백개국	인계원성관		아동경비 열막면가	
작산병취급	인계양살파		이런이날 웹사 지원	
파계생활국	인배암성파	29.	전하아몽 급하지만 및 관리	
內所規則改	인계암설과	30,	다자녀(생세야) 중산가장 육아분류 직원	
지치했장학	안제양상과	31.	소년-소녀가진 및 가정위막아동, 입암마등 자원 및 관리	
おお嫌損は	인계양성과	32.	아동반단지원계과 지원	
자하백경국	인계양성과	33.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파계생활국	양계약상과		지역아동센터 작원 및 관리	
지지했겠다	인계약성과	35.	다함에는본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자비행경국	인계양생과	36.	꾸步모두들이터 운영 지원	
计划编制等	र्ग जा शेश म	97	아용하대 예방 업무 전면	
자기생기 및 자기생기국	인계약성과	20	아동하대 파테아롱, 행위자 등 조사 업무	
파계했장막	있게암상파		아동하다 비배이는 즉각분리(일시보호) 등 보호조치	
전 전 W 전 조	양생양성관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권 업무	
자자생절로	만개앙성파		반3세 가정양육이등 안전 선수조사 업무	
計算機関係	언제암성관		이동학대 고착형 아동 유판기관 항동 절감	
자기했다국	반재양성과	43.	아동막대 대흥 윤관기관(법원 변원, 경찰 등) 협업	
지계했장국	양계합성과	44.	신불아돔 보호 및 미원	
지지했게국	인계약성과		요보호아등 접수·조사·보호조치	
라지팬작문	인계양성파	46.	보호아동 개명 보호계획 수립 및 양류상광전점	
办图制用证	언제약성과		보호중요이동 사주관리	
파지반점국	인제양상과		아동복지심회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파이 세 작 국	현재항상의		보호아를 원가정하기 시원선만 등 보호면장	
작의생기국	인제양성취		보호이용 면접교섭 계획 수립 및 실시	
마시베리국	인제양성의	- 51.	보투사업 및 보투시설(어린이집) 관리	
本性機関級	인계합의과		영안수당 된 건강안속수당 지원	
크리탈라	인계하십자		곱곳병이원이집 문행지원	
파계생활곡	인제항상취	54.	시간세요레 사업 주관	
라게했겠잖	인제와설록	55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지위	
마지벤트로	인계양성과	- 83/3	이번여김 방작인종 시선 피원	

母世	무서밀	형 사꾸	用五
자의생생표	인계양성과	57. 이런이집 기념보장사업	
자치생생물	인쇄양성과	58. 보육인한마음대화 평사 자원	
자치백정국	인계양성과	59. 육아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자세槽沿숙	인계양성과	60. 권혼중개업 관리	
자자행기국	인계양성과	61 청소년보호 출합대적 수립·시행	
과 비행경국	인제영성과	62. 장소년전문시설 위탁운영·청소년시설 산고처리	
자치행기국	인제양설과	63. 형소년 단체 지도-감독 및 청소년지도과 육성-교육	
과지생경국	인쇄양성파	64. 청소년 관련행사 계회·적원	
자치했게국	인제양성과	65. 이미분 청소년 보호-기관	
자체병점국	인제양성과	66. 청소년 관로·생활 상담 및 배砂성소년 선도·보호	
자시 배경국 자시 배경국	인제양성과	67. 청소년 유배환경감시단 순영	
	인제양성의		_
작취행정국		68.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경·관리 및 유제등록표 목록관리	_
자치행정국	인제양상과	69,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방장지도 관리(사업권환권 행사)	_
자기생생물	인계항성과	70.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문화센터 운영관리	
자시택정규	안제양설과	71. 선윤산유스호스텔 운영 관리	
자시벤장국	인체양점과	72. 청소년 선도 육심사업	_
차취해결품	양계양성과	73, 청소년프로그램 용역	
자자책정국	인제양성과	74. 정소년 발과후 아카테미 운영	
자비싼정국	안배양성파	75.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명원회 운영 관리	
자치해정국	인제상성부	76. 청소년상담목지센터 운명관리	
자치병장국	환경위상과	1. 소관업무 중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및반서무	
자기배립국	된 경기생과	2. 고장군 한경정책계획수립	
자시생성국	환경명생과	3. 그림스타트 네트워크 업의대운영	
가의행정국	환경위성과	4. 지후변화 적용 대체수업 및 추진	
과기제기국	한 경위 생개	5. 기후변화 취약계층 격원시업	
24 30 10 10 15	환경학생과	6. 교장차인마당 및 소생태공원 유기관리	
과시행정국		7. 함소증립 가쁜계의 수밖	
지원했게육	환경연생과	7. 학소중의 기본계의 수위	
자시행기국	환경위생과	요. 생태속 복린사업	-
가크렛제작	환경위생과	요. 생물가입되면서설 작면생대면 건입사임	_
자치됐장품	환경위생략	10. 어린이 생태체임공간 조심사임	_
자시됐장국	환경함생과	11. 노동자수의 생태분화된 조심사업	_
外用塑型量	환경외생과	12. 비살인의 및 특성공사 인하기	
자시팽챙궁	환경위생과	13. 수월오염출방계	_
자비행기국	환경위생과	14.[환경축장땅 및 토망오염관리	
자취행정국	한경위생과	15. 환경계선부담당 부과, 경우	
과의행생국	환경위생과	16.[환경개선작업회계관리	
外科朝祖录	환경위생과	17, 생대계 교란 생동 회의사업(예상구역)	
자리행정국	환경위생과	18. 생태계 서비스 차물계 계약사임(빗길존치사임)	
파티팬게국	환경위생과	19. 切用(用 2.後) 再足 明計 및 計畫	
자치생성국	한경위생과	20.[축집밥운염(진하수,도함. 하선)	
과시생경국	환경위생과	21. 수십면서 발급 및 관리	
자비생성국	환경위생과	22. 유제아생성물로써 하기	
과치생기국	환경위생과	23. 순원수립장 선정운영	
과지생기국	반성위생과	24. ज्यान्य माम्बान १ वर्षा ज्याचा क्या	
자치생생국	환경위생과	25. 다툼이용 시설 설세곱기를 받다	
자기생기가 자기생기국		26. 배출업소 인하기(배수, 기타수팅)	
	환경위생과	26. 에를 함을 한다가나다. 27. 환경오염봉정(대기,소유진동)배출사업광 인터가	
科的原用学	환경위생기	27. 환경오염문청(대기,소원진동)배출사업문 인터가	
사시에게 국	환경위생과	28. (자동차)만속포인트제 인센티브 기급	
라신설계품	반설위생과	29. 환경기요 골게 실스템 관리	
<u></u> 라지했게국	관심위생과	30. 항공기관 존심가스 유표관리계 수건	
과희행장국	한장위생자	31. 날아가는 기후하고 온표	
不可無用分	바장함생기	[12] 도양오염관리	
사시행제국	관성임생과	33. 야생동문 보호 및 용급구조	
파티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ś	한경제생가	34. 이 생동물 범위보호	
사기에게 하	환경위생과	3도 야생동은 리해방지단 분석	
다시행정국	반성위생과	34. 이성등등 미래에방시설 시민	
자리에게되	변경위생기	27. 아생동물 피해보셨지만	
자기행기를	환경취생과	3본 도립장하기 유통	

국별	부-사발 및 사꾸		
자치생권국	환경취생과	39.]데기배출원 관리 시스템 조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0. 아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자의행정국	환경위생과	41. 및공제 방지 및 관리	
과지행정국	환경위생과	42. 현경영항제가법	
자치행상국	환경위생과	43. 독생개품 구매판심화	
		44. 환경모역물광(배수) 배출사암장 지도원검	
자의행정국	환경위생과		
자치책기국	한경위생과	45. 테기-수월 기본 및 호과 배출부화금 부과	
과거행정국	환경위생과	46. 가족분노 배출시설 지도점점	
자치병장국	환경위생과	47. 기속보도 재활용시설 인터가 및 지도점점	
자치해결국	환경위생과	48. 가축분뇨 관련 영업하가 및 지모점점	
자치배정국	환경위생과	49. 악취배송사업장 지도점점	
자치까정물	환경원생과	50, 명예환경감시원 위속 및 문영	
자치백정국	환경위생과	51. 환경신문고 128 운영	
자기배경국	완성위생과	52. 환경오염사고 조사 및 현장조치	
자치해정국	환경학생과	53, 환경오염을 됨(대기,소용권등)배출사업장 지도권점	
자원병정국	환경위생자	54, 비산반지 및 목정공사 사업장 자도절검	
자치엔게국	환경위생과	55. 개안파수취립시청 기도설립	
		등로 내려가 등 하면 다시 되면 이 사이라면 내 전도 되면	
자치생성국	환경위생과	56. 세인하수처라시설 관련 생일이가 및 겨도권장	
자치배제국	환경위생과	57. 기타수골모염인 사업장 지도권점	
小利爾提特	환경위생과	58. 공중화장실 경관관리 및 지도점점	
자시행광국	환경위생과	59. 대기오업자동축권망 관리운영	
자비행일국	환경위생과	60. 과용과 매출가스 적도단속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1. 미계인자 관리 시생계획 수립 및 추진	
자비행방국	환경위생과	62. 고통도 비세면지 비상계합조치 시행 대중	
지의행정국	환경위생과	6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항 단속	
자시행정국	환경위생과	64. 이세먼지 시간대체	
자리행정국	환경위생과	65. 사업장계기를 배출자 신고 처리 및 지도점검	
자치행정국	환경하였다	66. 건설배기를 처리임 안 하기 및 괴도워감	
자취에게국	환경위원과	67. 전성배기문사리계배 선고 처리 및 기도설점	
		68. 시장-의료 베기뚭처리계를 선고처리 및 자도설경	
자치해제국	환경위생과		
자시행정국	환경위생과	69. 메기용기타입 인 여가 및 기도점점	
자비행정국	환경위생과	70, 메기물 세활용신고자 신고기의 및 자도합점	
자시행정국	판정위생과	71, 1회속품식을학계기도점검 관리(서울점액임소, 즉시시문가문임소, 참단합시소, 사용장)	_
자시생기국	환경위생과	72.] 파태문장 전도생길	
자치한경국	관심위생과	73. 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계도단속	
과보행장국	관정위생과	74.[문법무기 CCTV 접겨운엔 및 관리	
가야행정국	환경위생과	75. 관리대상가기 등 신교 서비 및 지도광건	
사치해정국	환경위생과	76, 지역화박사고대문계획 수밖	
자시생성국	환경위생과	77. 한후의 운행 및 관리	
자의행성국	환경위생과	78, 국토대체계운동	
과식생성국	환경위생과	79. 식면안진관리법 관련업무 및 적업피배보상	
구구하게구	환경위생과	80. 식중·경기를 제조 가장법 관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자치현경국			
자치세계국	환경위생과	82. 유리문화 계산 및 향토 모범업소관이	
작곡했장국	환경위생과	83. 식물권적임소 관리	
자리ᆐ짓국	한경위생과	84. 꿈통위생임소 관리	
가치 생물품	취정위생과	85.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 수업판매업관리	
가지빨갱품	환경위생과	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하지 생생물	환경위생각	87. 정단답서소 관리 및 설문등예반관리	
자리생각국	환경되생과	88. 열임신고 만원점수처리	
자치뭰정국	환경위상과	89. 소마자식품위생강시원 및 벌레볼공위생감시원 등 관리	
자기에 함으	환경위설과	90. 식품이온 및 가정불량식품(1399), 허위 과대장고(
사회생성국	환경력생과	91 석류성은기관 관리	
	한경위생과	92. 사업시를 받게 되지도 된다.	
가지에 생각			
사기에 가장	환경위생하		
사식생생급.	환경위생과	94. 원생님소 업주인 출시가 위생교가 게도	
자리에 방장	판결위설과	95. 조리사, 이미유사 면비관리	
사비생원목	관심밖생과	96. 식품소문판매업 반대	

국센	부서별	및 사무	11) 22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7. 이종 수가검사 및 관리	
자의제정욱	환경위생과	98. 위생상품 관리	
과시항경국	환경함생과	99. 어린이급식관리지만센터 관리	
자치생광국	환경위생과	100. 위생임소 음식점 시설계선	
자치행정국	#공취·생개	101. 모수커의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처리	
과치배정국	한 살이 생기	102. 가족본노매출시설 하기 및 신고에 관한 처리	
		103. 분뇨수집준반업 허가 및 기도정점	
<u> 기계개기</u> 기	<u> 반경위생</u> 편		
라치배경국	환경위생과	104. 수원관련 업무 전반	
자치ਆ경국	관계위생과	105. 수집요업품양관리 이렇게기	
자치해결국	찬경위생과	106. 수필요염축량관리 배출하잡모니바람	
자치배정국	환경위생과	107. 전국보양센조사	
과기생성국	환경학생과	108. 가축분노위리 기분계획 수립	
자치책정국	환경취실과	109, 가축사육계한구의 지장 및 관리	
자치판장국	환경위생과	110. 뗏도망 복원사임	
자치웹정국	환경위생계	111. 직하수 수집속집망 운영	
자시행정국	환경위경과	112 수정요업사고 관리(유타유출, 공공수의 유출사고 등)	
과기생기국	환경위생과	113. 낚시금치구역 시정관리	
과의생경국	환경취생과	114. 특성보양오염관리대상사설 설치 인허가 및 개도점점	
34433	환경위생과	115. 토양요양 측정이 운영	
과비생정목	환경위경자 환경위점과	THE PROPERTY AND A STATE OF STATE AND A STATE OF STATE AND A STATE OF STATE	
작선생님		116.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뿐리임 인하가 및 지도취점	
자체병장국	환경위생과	117. 잘돌이 지역(계곡, 하천) 수절검사	_
가시센격물	환경인생과	118. 한경오염물질 매출시설 자율성감염소 운영관리	
자시생기국	관심위생과	119. 이민건축물 관리	
자비팬정국	환경위생과	120. 석연배배공사 잡리 인터가 및 관리	
자치해결국	관심위생산	121. 악취의감사성 지원사업	
과치생생물	환경함생과	122. 육산막위인원사업량 지도점점	
자치행정국	환경위됐자	123. 슬레이트 처리적판사업	
자기생경목	환경위생과	124. 고장군 환경시설 운영관리 재탁수립	
과이탈정국	한경위생기	125. 현경기표시인 문항관리	
자되면정국	한장위생과	126. 한경기조시설 운영인력 효율적 배치 및 관리	
자시행정국	환경함인과	127 전 명비의 전 관리	
자시했게요	환경원생과	128. 취장기초사실 수수료반임 비용장기 및 운영조제 관리	
자지생기국	환경위됐자	129. 메기물차리장 주민지역 자원사업	
가실해가요	经有利利利	120 MAN S 3 A MAI II MAN T D S M S M	
		130. 정화조 청소인내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	_
작년에게꾸	한정위생과	131. 생활례기를 쓰레기메립시설 중설추권	
과지행정국	환경위생과	132. 사용품보 배명장 관리	_
가진 몇명장	한강인됐다	133. 各分层符 河南科娃 州风空	
자자생생물	환경위생과	134, 분노처리시설(인분) 개보수	
가지생기국	한경향생과	135. 생활배기를 받임 및 목표배립	
자기생기국	현경위생과	136, 생윤제기를 계근 및 일일 반입했참 문계관리	
가의 생경국	환경위생과	137. 전등수 하수중합되리장 이송처리	
자치생생자	환경원생과	138. 성증수 처리시설 기계 및 이승원로 점점	
자리텔레국	환경위생과	139. 사업장 반박 및 분부명의	
지치했게목	한경이생의	140. 음식문위에기관 옵션 차량수거	
사기생성공	환경위생과	141. 음식품위배기를 반입처리	
자되행정국	환경위생과	142 음식상류 자원화시설 경기검사 설시	
지시행성급			
	학생원생과		
자석행정국	환경위생과	144. 윤식물란 발리백 분노세리장 이송	
가실생태목	한경기생과	145. 유석물위 달리에 기관할 위한 여성한 배양	
자전생성도	한경위생과	146. 음식물을 받다면 만나고장 등 안정적인 수석리	
작원병생국	환경위생과	147. 제관용등 중의명 선명본리	
자원생생물	환경위생활	148. 제작원중 매각방법 검토 및 외광	
자시행정궁	환경위생과	149.] 제원표못 매가 및 세계수업 경수결정	
과제행정국	한경위생과	150. 압축기, 감용기 등 세환용품 선배기 설립	
자선생선규	환경위생과	(5), 문교반임(인본) 및 크리	
자시행방국	환경위생과	152. 문도처리(인문)수 화주중밖처리장 연계시리	
자치책하다	明 11 91 明明	15% 인설적인 문도처럼(인상)를 위한 약품관리	
자시생기국	환경위생과	154, 탈접조, 정산화조 등 수절검사	

국별 부서별		세 사무	
자치캠핑국	환경위생과	155. 문노파의 생산 및 농가 광급	
자치형장국	판결위생과	156. 폐가전제품, 폐험광등, 폐선적, 폐작유유, 예타이어, 폐의약품 수거처리	
무당활분사	환경위생과	157. 양동배기분 추가 처리	
파비행정학	환경위생계	158. 안취망지시성(단취법) 운영	
자의생산국	환경위생과		
과의행정학	환경위생과	159. 제호작업 등 사업장 주변 정비 160. 하전하구 쓰레기 수건	
자비했장국	환경위생과	161. 무단방식 쓰레기 수가	
파키 방원국	환경위생과	162. 고정군 정소대폭 수립	
과 시 생 생 것	환경위생과	163. 올레기 중앙에 주진	
자기 해 생각	환경위생과	164. 음식물 중량과 정책수립 및 추진	
		165. [음식문문배기를 관리 및 한양의부화 사업장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원생과		
자치했게국	환경위생과		_
사위했정국	완전위생의	167. 자번의 집의 및 제활용속권에 관한입무	
자치생생곡	환경위생과	168. 미신고 계활용품 사업장(고물성)관리	
자의행정국_	환경위생과	169.[생활폐기물 소작시설 문역	
과의행정국	계부의	1. 과 업무 중합기획·조절 및 예산회계·일반서부	
차세째정국	계부과	2. 지방세 부과·경수에 관한 조례 세장 및 문양	
자치생정물	과부과	3. 지방세(도세·군세) 부파·필수·분납·경수유예·귀소 결정 등 첫번	
차의생성국	계부과	4. 지방세 세무조사(일반·별인)에 관한 선반	
자치행정국	제무 파	8. 지방세 과세전적무선사, 이의선장 처리	
자치행정국	피무과	6. 의방색 심의취원의 구설 운영	
자키솅정국	계꾸계	7. 지방세 세명자료 및 정보와 운영관리(인산설 운영)	
자기생성국	과무과	8. 지방세 세표~연간 일 지층네산(비비세 등) 유명+관리	
자치병장국	개부과	9, 지방세점운영 일반(세무선분증, 날세관리현장, 부진방지 지도 등)	
자시팬게국	제무하	10. 기반세 성실날세차 우대 및 작원	
자치생생국	제무파	11. 지방제 마을세우시 운영	
가 비 반 개 학	. गांग-गां	12. 과 항상성비송납 지출·문에 및 관리	
자리해게국	제무과	13. 일반회계·흑별회계 지증 및 집상점비 교부, 계산, 심사	
자자병광국	제무의	14. 예산권산 및 계방계정인감 작성	
자치행정국	계부과	15. 국 도비 제배점에산 사중	
자지생성공	재무과	16. 공사·용역·볼륨구매·입찰 및 계약관리, 설득증명 발달	
여기 생기국	계무리	17. 판급자계 조님 및 계약관리	
자세행기국	제무과	18. 급여관리 및 있말장산 운명	
자시변 방국 -	제무파	19.1작의부의 운영 전반	
	지부리	20. 세엽세순의 현급 관리	
작성병생각			
작사병생곡	재무과	21. 통합 제무보고서 작성경산증업, 통합제무제표·회계법 제무제표 등인	
자기행정국	제무편	22. 공유제살관리 중앙계획 수업·시생	
작의행계를	제무바	20. 골유계산관리 및 권리보장 (취투·거봉·교관·대부·사용하기 등)	
작사벤정국	湖草油	24. 국정사 및 관사 시설 표기관리	
자치행정국	제부라	(25) 본 함· 리속기관·사업소·윤·명 경사 선축 설계 및 시골 감독	
자시행성도	제무파	26, [공용학방 관리 및 유명	
<u> 가치했정국</u>	제무제	27. 항공소급계의 소립 및 제공조사	
자살해결물	제무관	28. 정사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훈련관리	
자시행정도	湖岸中	29. 지방세정공세의 운영-관리(영조 시설문)	
자기생살로	계루파	30. 본장 에너지 운영·관리	
차리행정국	理學學	31, 지방재 경수 및 세외수업 중합계획 수립·운영관리	
자비생성국	예무관	32. 자급관리(윤유·제배장·자급배치 등) 관만	
자자배집국	제부과	33. 세입철산(도제·군세·세세후입) 전반	
자치병경국	18.77.19	34. 닭고 계약-운영 및 감사	
자치배별국	계찬과	35. 배당제 장수 및 제당시장 (항치·공예·경손의문 등)	
자비행성국	明华政	36. 지방제·국제 수납관의 및 설산	
바비행국	3(4)-31	07. 지판제-국제 과오남 관급 및 관리	
자리에게 국	계부과	그리 자동하게 대답사망을 갖을 되구~번호자 입지	
사서행정국	明基 34	39. 병원배당급 성구 및 후대	
자치배정국	제무리	40. 세산세(되지, 건축물 준데품) 및 자료운임 센티	
자시행정숙	444	1). 제산세(토리 건축용 취약본) 개원조사 개혁수업	
	明华河	4年 제산제(量本, 건축能 후백분) 자가 및 제위관리	
자세생성국 자식생성국	개우카	4일 세경에(대신) 선생님 무역한 무역한 사기 및 계획한다 4일 계별구의가리조사 공합계획 수립	

국별 부서별		발 사꾸		利田
자치생성국	재무과	44. 刈划季州	가격 조자-산정-건중-이의신장 처리	
자치형병국	제무파	45. 개념주택	가격조사 부동산 평가밖인의 운영	
능이존산업국	농업정책과.	1. 궁·바 업	무 공합기록·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보안업무	
농어온산업국	농업장국과	2 등이존병	전계의 수립 및 조점	
등어촌산업구	농업정류과	3. 동범사업		
농아혼산업국	유업정체의		유 이용 관리	
동이존산밥국	告험정확과	5. 동촌에게	원장시스템 관리	
높이혼산업국	농업생략과	6. 등이론육	참사업지원기급 관리	
농이존산업국	농업장씨과	7. 농업생인	20 of 10 th 10 th 10 th 20 th	
5 이 도 김 11 의 도이 존 사이크	5 전 경 역 41 는 61 전 등 11		도이로 10 시문사이권과 사이하	_
능이존산입국 농이존산업목	동영광국자	8. 동어업.	는어른 및 식품산업정책 삼의회 생산의 권화	
	농업장목과	9 등이론의	계사업 계획	
농어혼산법국		10. 여성동업	인 최지 관련업무 전반	
농이혼산업국	농업정책과	11.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_
동어온산업국	중업적 배파	12. 정원부구		
눌어추산위국	농업실택과	13. 정보리함	· 첫세	
용어존산법국	농업장씨파	14. FTA 35	147	
눌어존산입국	签 自到明初	15. 苦門也是	신고하기에 관한 처리(사주관리 포함)	
농어혼산업국	동업계백과		F용도 임시사용 허가·협의	_
능어온산업국	동업캠페과	17. 중의조심	비 및 부과급 부과-경우	
놀이존산업국	농업장백과	18, 고등감식	t 생산 주진	
* 어른산업국	*법생색과		제고사업	
농어촌산법국	%업설계계	20. 지학상진	사업	
농어촌산업국	충입권의라		판매법등록및 관리	
농어혼산업학	※심정배과	22. 世土与号	보전제점기문제자원	
동어존산업국	용법정목과		· 기능업지원	
농이본산업국	동법정책과		입 부참기통제가면	
상이존산업하	参信批明的		계에대 배망 계원	
중어른산업국	중업정책과	26. 동업기계	지만 및 사무관리	
동어존산업국	동업장배과	27. 191218	요셑 게도안네	
중이존상입국	농업정의의	28. 전략생성	및 수급관리	
높이본산업국	동업장백과		생산 및 수급관리	
동이온산인국	동업체제과		관리 독명하게 운영	
농이존산합국	동합경제의	31 3400	매일 보관관리	
농어존산업국	농업장배과		커리장시설 지원, 겨도 관리	_
동이존산업국	는 일 전 제 의 등 일 전 제 의		비가림파우스 및 생산시설 지원	
				_
참이론산입국 보이 2.00급	농업장책과		생산 육성및 직원	_
농이촌산업국	농업장목관	35, 위에 가장	생선 욕심 및 기원	
농의총산업국	농점성트관	36. 천환경립	예탁하세산단의 자퇴	_
농이존산영국	安업장목과	37, 11 1/12		-
불이존산업국	중엄정목과	St. P. A.	과수산업 자꾸	
높이콘산업국	농업경투관	39. 한법생선		_
불이관산위국	농업정국의	40. 물업시설		
불미혼산입국	농업장하다	41. 재해보험		
돌이관산업국	동업설록과		조건물리시비 기설지함계 지원	
들이존산입국	安全沒有可	43. 기에파신	문 숙제(레풍고수)	
농이존산업국	동업캠프라		F산개원사업 수건	
품이존산법국	等は当事件	45. 号放平台	三川 双 崇拜	
높이찬산업국	동생산목과	48. 琴提本。	[산이리 관리	
농이혼산입국	물업정목까	47. 特护中书	[규 개리	
높이존산법학	중업명폭파	48. 战况净 #	li미 웨양상 조심사업	
농이존산업국	동업정복과	49. 미역복진	설 축제(복분자·수박)	
상이존산법하	상업정택의	50, 434.70	제리를 관련업무 선명(연구: 지도업무 제의)	
높이손산업국	독점성복과	51 30-41-50 3	(은 유통내계 구축사업(세운지장고 등)	
동이존산업적	농업정책과	52 // 31 41 41	A STATE OF THE STA	
높이존산법국	82344	53. 기본학교		
동이찬생성국	동업장에라	54 9 300	#한근모사 크오그램	
농이준상업학	60位于明 和	55. 8 2 2 9	of el	
돌이본산입국	는 업무 목표가 -	56. * 2.00	Difficulty at the	

국별 부서별			밥 사무	
농이존산업목	뉴엄정배과	57. be 2	도부미지원센터 설치분명	
동이온산업국	동혼합이라		경우 중합기회·조정 및 예산회계·양반시무	
동어혼산업국	卡존황의과	2 010	가꾸기 시험 천반(국립마율공동문화조성사업, 베이플-스본 공	
농어혼산업국	공혼합의자	3 518	부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송이온산업국	各色發音器	4.360	존인박 신고 수리 및 사업자 관리, 교육	
농이혼산업국	농촌반역과	5 0 8	사티 관련업무 추진	
높이손산업국	多色脏毒种	6. 3 5	세사업 총합·기의 및 조정	
R 어른산업국	*손함역과	7 315	제관련 법령, 조계, 규칙 등 관리	
		2 30	게 관련 혐의기구 설치 운명	
농이손산의목	· · · · · · · · · · · · · · · · · · ·	8. 20%	그 전하고 등에 하셔서 하게 즐겁니	
농이온산업학	농근항역과	- 보이	구 기억공동계 광성화 계획 수법	
높이혼산업국	****		공동제 현광 관리 및 DB 구축	
농어촌산업국	- 뉴트웨백과	11. 0.8	계 항성화 사업(생생마용만들기 지원, 공문제지원센터 운영관리)	_
꿈이존산법학	*존광리과	12, 80	마을 경관조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동이존산업국	各主자리파		야장 존탱츠 방당 지원사업 사후관리	
そのそが出せ	光色影引用		웹 에너지 차립마음 조성	
놈이촌산업국	농촌왕의과		기술 왕은 주민국간 지역문에 해결사업(로립부드 기반 법성권된 경장시단 개방)	
동이혼산업국	各色數母科		· 동촌역화계 뚜진	
상이온삼강국	安色新可科	17. 88	-세험유앙마을 지원 및 관리	
높이존산업국	소관관리과	18. 30-4	YS원 인하가 및 관리	
동어혼산업국	协选批准 再	19.1815	· 텔 농촌관광 거림마를 운영활상화 및 사후관리	
농어존산업국	농근장역과		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봉이혼산업국	상은반비의	21. 413	[계 농업 歌성파 계원사업	
상이온상영국	등은항력과		형약 업무	
창비존산업국	동은광택의		·만들기사업(구 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모양)	
높이온산법학	安在推到河	24, 713	명활기됩시합(구 기절면 소개기 중심마음 개발사업 포함)	
높이본산인국	동존합니다.	25. 103	-중심지 환성화사업(구 유면소제지 중합정비사업 보험)	
동이혼산업과	농촌환역과		수학생 강화시업	
	등은 하리의		역 교통모델	
불이출산이라	유논병역자		보육이전계선	
농의존산업목			문항지상 센터	
동이은산회학	** 유유리가			
눈이를장되어	* 등 문 발 다 가 !		를 생성부 전반 	
봉이론산업물	농촌반이라		1푸드 파쉬 및 전쟁 그는 자리 레스크리	
불미혼산위표	安全發目可	32 47	로 부산급의 및 인판권동산을 학교급적	
농이존산업로	동혼밖박과		산업 및반	
높이존산업되	安全脏时时		는산업업자 -	
중의존산의학	生产业业	15. 数3	(중기업육성사업	
농어촌산업국	공존광의과		5가공업제 관리	
상이존산업국	多色杂号等	37. 10	· 통기법 상업기들유원 관리	
동이존산업국	· 동문사리자	38, 74	두배조 면에 추진 및 관리	
상이온산업국	初色胜到神	39.1005	[산업짜성사업 컨벤(고구마)	
중에콘산업국	농촌환역과	40. 44	본자, 장이 푸드내라의사업	
동이온산업국	농촌왕의과	41.1世2	[공산업육식사업	
높이존산업국	동은황락과	42 4	: 파석업지구육성사업	
동이존산업국	농촌환역과	43.100	[종6차산업 전반	
상이존산업국	多色計印井	44 / / / 3	가공, 효율, 실제를 개발, 투여충원 등문 위한 연구용명	
불어온신입국	동혼합력과	45 1913	[앤바이오연구소 플릭	
통이논산업국	英字파이의		中晋日本升台	
등이존산입국	*문합리과		(左连 메미공인 조선사업	
등이존산업국	美华斯森林	48 7	100년 전 100년 기가 기 년 1월 유통사업 중앙개최후입	
상이존산업과	かを計引み		·물 요중 생티 관리 및 시설보인사업 주건	
			18 명을 하다 되는 것 같아요. 사용 보관성고 및 급하선명을 지원합니	
농머온산업국	동존환력과 등존환력과			
누어촌산밖국	등존환역과		P(안 현동상류관리시설) 사실 기원	
동력은상영국	2017		가끔 유통 시설 및 살이 지역 ************************************	
용비존산의공	농순반의사	531 22	학에 농산된 유용시설 박존 및 사후관의 프로	
높이온산되온	선수밖인간	2414 14	[동산문 시장조사, 시장제의, 브랜드 및 상표관리	
송어혼산영급	法法計위의	99, 373	·용 관등중합계획 수립 및 동산을 유통위부	
등어혼산업도	美老胜利用	DE 77.	[장산k) 수술기원 및 관리	
동민은산업국	不全有可以	E77 1 199.1	F 농산물 수충불위비 및 수충포장과 제작 기반	

母姐	부서빛	웹 사무	推进
농이온상업국	삼촌광택의	58. 고창 동투산품 해의 관속했사 주건	
통어혼산업국	농촌합역과	59. 고광상품 마케팅 종합계획 수밖	
농이온산업국	불통하였다	60. 고장상품 시장조사 및 개최	
동이온산업국	농존활리파	61. 고장상품 홍보(광고) 및 바케팅 자전사업	
황이손산입국	界學新福祉-	62. 고장상품 봉탁브랜드 개발 및 운영관리	
송이손산업곡	法色항하파	63. (취고상반도배기규동 지원관리	
농여혼산업국	유존환역과	84. 고장산품 유봉 중시자 교육	
는 이혼산업국	등존황병과	55. 교장상품 원산지 표시 지도	
농야온산업국	B 전 함께 파	66. 교장상품 로장제 및 택배비 작원	
농머존산업국	청촌활박과	67. 동목산품전시판매찰 및 선언캠핑플라자 관리	
농언론설업곡	농은촧력마	68. 고창상품 배의시장 개혁	
동어손산업국	무슨왕택과	69. 뉴산을 통합마케팅 활성화 격전사업	
불어쓴산법폭	各年관리자	70. GAP 인증 확대 사업(포장적미, 이약관리세계구속)	
동어찬산업국	安은항학과	71. 전착 주요등산물 가격안감 귀웠사업	
뉴어촌산업국	농촌돢벽과	72. 농수축산물 마케팅업무 전반	
동이온산압국	告色합비과	73. 농수축산한 수출업무 전반	
높이춘산양류	分色함력과	74. 고장물(높음고장물) 운영	
농어혼산업국	해양주산과	1.[과 업무 종합기록·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상이존산법국	배양수산과	2.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임 및 중반	
동이존산업국	배망수산의	3. 수산사업 못할 추진	
참어촌산업국	배양수산과	4. 이윤제험마를 홍보, 교육	
※이존산업국	해양수산과	5. 어촌계합마음 사무장 세용지원	
높이존산업국	磁명수산의	5. 이존제임마을 사무장 제용지원 6. 이존제임마을 환성화	
농이존산업국	確守主任理	7. 이관제함마를 경진대리 함가 주건	
뉴어온산업국	백상수산파	8. 갯벌습지보호지역 기묫제의 수립 및 진증	
농어혼산업의	배양수산과	9. 갯빙급지보호지역관리(홍보, 모니터링)	
농이존산업국	배양수원계	10.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목본주반이을 환성화)	
농이콘산업국	배양수산파	11. 이항관리(환경,살태 등)	
등이존산업국	可分中处理	12. 이탈인전시성 관리	
뉴어존산업국	제양주산의	13. 여학사실원용하기	
	배양수산계		
높이혼산업학			
눈이손생범곡	깨양호살판	15. 현일업 생산 전투관리	
높이콘산업적	배위주산과	15 선일인 항도산업 주진	
동이순산업국	배양수산파	17. 원일업 자역전략이품사업 추천	
늘어준산업국	제압수산의	18. 천열염 생역경제권 면제 뭐박사일 주건	
동이존산업국	배망수산라	19. 배우유장 운영 및 관리	
동이존산업국	제망수산의	20, 모-이 교류 항설화 추진	
돌이콘산업국	해양수산하	21. 지역폭산을 축제(수간을 및 장어막는 낡)	
동이혼산업국	해양수산과	22. 자연환경 축제(고창개념)	
들어존산업국	세양수산파	23. 낚시이십 선고수리	
높이존산업국	해양부산과	24 산업기상요원 사후관리	
※이존산법국	예양수산의	25. 수산가중업 허가 및 신교처리	
농어온산업목	해양수산과	26. 이선등록 몇 변경발소등록, 이선전조 및 개조발주비가	
풍이손산업국	研算中华的	27.[연근패이업 이가 및 선고	
농여혼산입국	제양수산과	28. 연근웨어업 구조조자사업 주진 및 어선건조, 살비 현대화	
높이산산업국	해방수산의	20. 어촌계설립인가 및 영어조합법인 4~성	
동이존산업국	해양수산의	30.1 수산품원산자표시 지도 및 단속	
8012493	배양수산과	31. 이전염 위반이신 행공처분 및 파테르무리	
동에온선영국	可似乎任司	32. 육상합의 및 종보생산이업 하기	
동이존산업국	예약수산의	33. 어입권 여성 원꾸들은 방법	
등이존산업다	바까수선과	34 선거중 해면안식사업 방문	
		35. 전해이상 이윤개발 개의 수립	
늦어슨산업적	可労中は外		
농어혼산영국	세양수산과	36 전해양식이랍 면에 및 이전, 번경인가	
상이온상병학	해양주산과	37. 출생식시엄 추진 및 사포관이	
늘어린산병구	神骨全线性	38. 중 단작원조설 부탁급 경수	
※이는 11위 B	배양순산라	39.[인물원 설명됐기	
중에 순상성로	可划个处理	40 년하의 우선훈위 전성	
높이논산업국	비탈수산과	41. 의원조사보고에 의한 역장 파인	

국별	무서별	된 사무	njæ
농어온산업국	예약수산의	42. 무실관리 이업권 행정치분	
높이혼산업국	제양수산과	43. 양식이랑 관리지도	
황이혼산업국	해양수산의	44. 증양식 비배보상 관련 소송업무 수백	
용어운산설국	해양수산의	45. 여성순성 보장 및 분생조점	
		16 1 - V - S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등이춘산업국	제양수산파	46. 수산중앙의,이상어의씨백부구	
높이온산업국	배양수상파	47. 내수면이업 면허, 인,하가 서분	
동이존산업국	해양수산과	48. 내수명이업 개발, 지도 및 사후관리	
높이콘산업국	해양주산과	49. 내수면이법계 육성 및 지도감독	
동이존산업국	매양수산파	50. 배 내수면 자원조심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농이존산업국	배양수산의	51. 내수면 보호수만 지정 및 관리	
농이혼산업국	해양후산자	5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동이온산업국	배향수산파	53. 때면 및 내수면어법 안전조업 지도, 단속	
동어혼산업국	배양수산과	54. 비난 구조 및 사고 방의 서도	
※이혼산업국	배양수산파	55. 우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생경크분 및 범칙어선 과장급 부과길수	
높이존산입국	태양수산자	56. 대수민국에서해복구사업주건	
등이손산있국	배양수산과	57. 갯벌품권장에 개발 및 사후관리	
동이준산업국	매양수산파	58. 자유관리어열 육성지원사업	
능이존산업국	해양수산파	59, 유료낚시티 판과	
농이존산업국	메일하다신제	60. 내후인자원보존 및 관리	
능이혼산업국	제양수상하	61. 볼법이입 신고센터 운영과 볼뵘의입DB화 구축	
동어혼산업국	배양수산파	62 이선대명 신고서 운영 관리	
동미잔산업국	매양수산과	63. 공유수면 방치배선조사 및 관리	
	With the state of	D2 12 4 4 7 3 4 4 C25 1 1 1 1 1	
농어촌산의국	배양수산파	64, 리조에를 항상 및 피해복구	
농어온산업국	배양수산파	65. 연안급기되게임무추진	
동안산소선생	배양수산과	66. 면안 백양요엽방지중합대학학방계사업주진	
능이혼산법국	해양수산과	67. 연안동합관리얼청씨계획수립	
농어온산업국	해양후산과	68. 영광원권은배수이업과해보상적원업무주원	
능어콘산업국	대방수산과	69, 바닷가 정소 및 패양쓰레기 거리	
공이존산업국	배양구산파	70. 공유수면 함사된 에게	
동어진산업국	해양수산과	71. 균유수현시설품실배조사및사후관리	
농어촌산법국	해발수산과	72. 해양시설을 지도 전점 및 사꾸관리	
왕이존산업국	해양수산의	73. 해양수신시성사업전반	
능어존산업국	배양수산과	74. 이론세일마율조심 및 관심계선	
농어온산업국	배양구산과	75. 면안배험활동 신고경우	
놠어존산업국	해양수산의	76. 습지보호계역사업사업	
청이촌산밥국	배양수산과	77. 고장렛벌생태계목원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의	78. 프리미엄크창켓제센데부합단적조심	
동이혼산업국	해양수산의	7요. 어학관련시설사업	
%이손산업국·	해상후산의	80. 우산문지배장시설사업	
높이존산업국		81. 현일염 생산 유통시설사업	
장이는 도성크 참이존산법국	배양수산의 배양수산의		
	W 21 - X -		
농어혼산법국	배양수상의	83. 해수욕장 환경계선	
동어혼산업국	배발수상과	84, 도시중앙개발사업	
높이존산법국	배양주산리	85 인안정비사성사업	
높이존문영국	배안수산파	86. 해의 사유산업 지구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높이손산업국	배당수산과	요? [방등 송호 경관교명 설치사업 및 휴가관리	
상어온산업국	배가수산의	88. 실현명 군유업전 업무 및 유지관리	
뉴어온산업국	세방수산의	89. 여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원	
* 등어본산입국	배양수산의	90. 무어가요 6가 사업 및 운영관계	
	배안구산의	91. 수산업 이논 수업적가의 개원(어민공약수밖)	
높이존산입국		00 Latest at 8 0 at 23 at 24 at 20 at 24 at 25	
동어중산병구	예상수산의	92 권에 귀존유자라 인정 및 적원업무	
황이존합합국	배가수산의	93. 목세시 양식을 확성히 및 환경계선	
뉴어콘산업국	제방수상의	94. 바지막 주자 대랑생산 기반구속 및 처리장 확실화	
높이혼산입국	메일수산의	95.) 공소인 배를 배양관계 조작용의	
높이손산위국	예약수산의	96. 세 삼절계 문생력인 업무처리	
등이존산업국	배생수산의	97. 변경에 위한성 및 설명식품 기공공명 관리	
동네온상업국	해산소산의	98. 수선용 선선성 조사 및 수산용회약통 관리	
유미분산업무	세방수산의	99, 지구적 집 생산기만 구속 및 브랜드 특성	

可提	早村唯一	림 사무	14. [64
농이존산업국	배양수상과	100.[전환경 연규 및 지리적표시계 추진	
동이손산업국	해양수산과	101. 폐류 준비살도 및 폐류망 자원	
농머온산영국	해양수산과	102. 원환경수산을 생산지원 지불당 지급	
는 는 어혼산입국	해양주산파	103. 수산봉 산치가공 - 처리거장 시설지원	
는 이 온 산 입국 -	배양수산라	104. 구산물 가장 유통시설 및 수출전략품목부설	
		101 T C & T 0 T F T E X T H U D D T T B	
놈이손산업국	배왕수학자	105. 고장대표 수산물 마케팅 및 판촉했사 지원	
동이혼산업국 농이혼산업국	쌔앞수산과	106. 수산업취임인 대회 및 신문보급 자원	
동어찬산업목	배양수산과	107. 망식수산물 계해보험가의 지원	
돌이존산업국	예양수산과	108. 수산양식문야 매너지랖감시설 보급사업	
동어존산업국	배명수산과	109, 양식이장 자들과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시설 지원	
송어본산업국	폐양수산과	110, 양식시설립대화(용자) 사업	
농어존산법국	해양수산과	111. 합년이존경작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과	神만수산과	11의 벤존이었신고	i)
돌이존산입국	태양수산과	113. 수산자원 산란시식장 조선사업	
동어혼산업국	배양수산파	114. 생분배상 이구 보답사임	
동이손산업다	网络中位网	115. 배양쓰레기 업무 전반(바다홗정기월이, 집바장)	
높이존산입국	해안수산과		
높이존산업국	배맞수산과	117. 배파리 구제사업	
했어존살법학	神학수성관	118 연안 때안사고 안전관의	
동어혼산업국	예약수선과	119 교환생님 시생조립사임	
높이존산맞국	폐항수산과	120. 때양생대원성의 치원사업	
높이존산업국	해일수산하	121. 패역이용업의법도	
높이손산업국	해양수산하	122. 이선장비 지원사업 전반	
불이손산입국	예양호상과	123.1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사후관리	
등어혼산업국	배양수산과	124 [매망공간관리계원 관리	
농이존산업국	매일수산의	125. 얼만등산어른개발사업(여존지역)	
높이혼산업국	해양수산의	126. 이혼성활력 충전사업	
높이존산업국	배양수설의	127. 햇빛식사원 조심사업	
송이존설업국	예약수산과	128. 이른뉴팅 300사업 및 오선 뉴딩	
농이혼산업국	대양수산의	129, 미른 유류시설 맞충한 귀이스테이 조심사업 주진	
20 CON	배선수산계	130. 탐사르고장렛병생력 운영관리	
돌이콘살인국	해양구성과	131. 원사트숲의 관리 및 숲지도시 회부	
농이손산법국	배망수산가	132. 국내외에트워크	
상이관산업국	해양순산과	133. 고장갯벌 홍보(강면, 인터뷰 튜)	
농이존산업목	배압수산과	134. 고풍갯인(콧빛센터) 홈페이지 관리	
동이존산법학	劳会师	1. 학산반선계의 및 학산생의 문망기회, 조각	
동아존산업국	क्रिक	2. 축산단제 축설 및 지도	
높이혼산업국	속산파	그 눈썹사업 및 동얼중합자급 계원사업	
높이진산업국	작산피	4.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결정해장화사업	
농이혼산업목	축산과	5.ICT 용복함 및 케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상이온산업국	3/位置	G. FTA 可明度进分增	
농이혼산업과	학생기	7. 방산업 및 분중산업 유럽산업	
동이론산업국	속산의	요 하산기가게 기반사업	
등어운산업국	-0-AL29	D. 학산 레웨티계사업	
장이는 사업국 등이론사업국	숙산의 숙산의		
문의문산되목	호선적	11. 가족보노 꿈통자원과 사업	
돌려온산의대	李沙桥	12 핵미지공조 및 상포비 의원사업	
동어온산업국	충성의	13. 가족꾼도 아취막계사업	
불어운상함표	考点的	14. 수통조절계 지원사업	
동민준산업물	속산의	15. 가축분노차리 장비 직원사업	
동이혼산업국	4/1/24	1G.[가족통계조시	
동네은산업상	44.4	17. 축산업, 부파업, 중국업 평가(등록)	
송이존산법국	0.94	18. 독선장 가운기관위 의기(신고)	
불미순산업국	动作网	19. 국산을 보관업, 운반업 관매업	
동비존산업국	194	20. 축산성 이러계 주건	
등이온산입국 등의존산업국 속이존산업국	6 (1 A) 6 (4 A) 6 (4 A)	21. 호하당 제센트사업 22. 무게 3선된 규칙 계도 다시 23. 독산장 HACCP 전설및 사업	

부서빛	웹 사꾸	明丑
寄任時	24. 송아피생산안정사업	
육산과		
축산파		
작산파	27. 기성소지 보완 및 사후관리	
숙산사	28. 원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 余公市	29. 한우안소 유전형권 계략사업	
	37 1 6 C 计连续通 系列 III 对左 75 至	
	98 나는 기사가 가지 기의	
	30 (4)% Well 21/8	
200		
737		
3113		
국산제		
37.0		
市公平		
	53.[공개우 및 발뉴로 우립취사 실시	
막삼카		
	SE 가락꾼노 반접속산들가 지도 점점(고백문과 등)	
바산피	57. 퇴-백미 광골관리 및 시험포 운영	
축산취	58. 가축분도 회-멤버생산 및 농가자원계원 수립	
15 전 44	59. 기족방의 제비 수립	
학산관	60. 가족방의 및 진료	
축산과	61. 기축권염박 예방백신 계원	
축선세	62. 구제에 ·AI 차단방의 소독학중 공급	
⇒ 21.44		
	69 설계상 변상한 도메장이를 되기 열 세점	
	72.15-용시에 되면서 될 지역시에	
	73 기술인공주시소 계절 인하고 및 제보건도	
	74 新泉島川 (0 4 3 1 新岩 25 新潟 州 市 中国	
	101 N S 3 N	
10 12 41	1 - 60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中国各种的基础的 医阿里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斯	응산과 25. 환우개량 및 기반속성사업 중산과 26. 보급조성 및 점속 9가에 기계

국병	부서빈	VI 시구	11 31
농이혼산업자	산립공반과	1. 과 업무 중합기록+조정 및 예산회제·일반서무	
삼이온산업국	산평골원과	2.[산립기본계계수립 추진	
높이혼산입국	산림꾼원과	3. 살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농이혼산업국	삼위공인과	4. 공유업 관리	
농이혼산업국	산림끝린과	5. 산립경염계획인가 및 사업신보	
농어혼산업국	산범규원과		
동이존산입국	산림 문항과	7. 조립사업(전체수, 끝나무, 육설수, 경관조립, 유유토지)	
농이혼산업국	상림꾼린과	8.[조립지 가꾸기 사업(단급제거,품배기)	
告어온산업국	산립공원과	9.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높이콘산업국	산림꿈원과	10. 집책숲가꾸기(솜아비기, 첫연립 보육 등)	
동이존산업국	산림문원과	11. 공공산회가꾸기	
품어른산업학	산림장원과	12. 업도사항(신청, 구조개항, 보수) 및 유지관리	
농이손산업국	상립공원과	13. 등립사업 및 산림소탁사업 자원	
동이존산업국	산립공원과	14. 산립조합 욕성 및 적도	
돌이온상업국	산립공원과	15. 제중립 관리 및 양보 생산	
등어본산업국	산밖공원과	16. 일산물 품필란리 및 유용구조계선	
동이존산입국			
	산항품인과		
살이론산임국	산민공원파	18. 산립계대 예방 및 부구. 삼사내 취약지역 판의	
눌어혼산입국	산위공원과	19.[선명내 설명했위 단속 및 사건처리	
었어른산위학	산립물명과	20. 산분 방지 예방 및 단속	
뉴어혼산업국	산림꿈묏과	21. 산류방지 인력 및 전화장미 관리	
높이은산항국	산립공원계	22. 산지원을 하가 및 협의 선교처리	
상이존산업국	산립공란과	23.[산지이유구분 조사	
높이손산업국	산림공인과	24. 보면 산의 기장 및 배계	
농어은산업국	산립용위가	25. 산립보호구의 지정 해제보 사업하기	
높이혼산업국	산밥문받과	26. 산립대 도시·의 계획하기 및 취존의 복구	
등이혼산입국	산항공원과	27. 설립명중에 및 소나가 개선증 방계	
동이온산업다	산합공원과	21. 민산물골위(세취) 이가 및 신교	
움이존산업과	산람까면과	29 14 9 4 9	
	산림꼴뛰과	30 산물론회가당 관리	
분인축합명판			
불어혼산업국	살림공원파	31 전문산 생태를 조심 및 현리	
등이온산의학	작별공위과	32.[산민개의모델쇼 조실명 관리	
동역은상업국	산림품원과	35. 바반조실 및 관리	
동이손산입국	산항공원과	34, 생활조선 및 관리 (유민 도로면 緊원조선 포함)	
旋인관산업국	선활꽃전과	35. 가보수 조성 및 관리	
농이손상양국	산립장현과	36. 1급-민 1산 카무기사업 및 관리	
농이온산업국	母祖发驻神	37. 등산로 설치 및 관리	
높이존산업국	산법공원과	38. 즐겁 조심사임 및 관리	
상이존산업국	신민공인과	39. 보고수,도거수 외권수술 등 반대	
상이온산업국	신립품ੀ의	40.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농어혼산업국	신립공원과	41. 자연류양람조성 및 관리	
농이혼산외국	전명공원과	42 산행복장 등의 조성 및 관리	
높이온신입국 뉴이온신입국	산립공원과	4일 수록권조실 및 관리	
50 5 40 5			
등이존산업국	간위상인과 기계상인과	44. 유망시설대 수록 전계 및 우리관리 가운지도	
쌓이온산명국	산범물변과	45 서예안 바람꾼인 관리	
동이존산업국	산립문립자	46. 도시범 기본계의 수밖 및 샀네죠^	
등이존산업국	산위문편과	47. 학세발지균임 조실 및 판매	
눈이존산업국	산명급원과	4년, 학생자급지원사업	
등어본산업국	산항골면과	49. 선운산도함함된 조실시법에 관현 사망	
높이온상업국	산림몰린과	50. 선운산도월조원 시설비 운데 및 관리	
농의존산업국	산림공원과	51, 당방력 원서 및 안전지도, 사용료 영수	
상이손산업목	0.01.0.01.0	52. 선윤선도함꾼원내의 업무 지도 단속	
동이존산법국	산업공단의	5년인원 산의 공학학의 경우의	
등이존산업국	찬림공발과	54. 산합계요는 사회 조심 및 관리	
Manual States		后,長주산 판매 시유의 호 관리	
등이 존산되어	사람으로 하		
뉴의관광병목	상되고차관	56 2 1 2 2 2 3 3 3 3	
상이존산업자	전세공원과	57 [포스호 등이 요설 및 권리	
높이존산법국	- 찬밥불편과	58. 생활호 등의 조설 및 관리	

국별	무서별	및 사무	11/2
농이혼산법국	산림꾼만과	59, 임사동기	
동이존산업과	산림공원과	6D. 산립사업법인관리	
동이혼산업국	산림물린과	61. 임산봉 가공산업 육성	
농어혼산업국	산림공원과	62. 도시공센 및 녹지시설 관리	
The second secon		63. 도시공센 조성 및 계획 변경	
8이존산입국	산림품원과		
동이혼산업국	산업공원과	64. 사유원경영정보시스템 관리	_
품이존산업국	안권품팔파	1. 과 업무 중합 기회 조건	
용어른삼업국	안겠춤팔후	2. 안전제난 점세 중관 업무	
농어온산업국	안권품반과	3. 예산회계 및 일반시부	
농어온산법국	안전충필과	4. 비상대비훈련	
돌이온산업국	안찬품판과	도 전시대비 업무	
동이온산업목	안변용함과	6. 고장군 방위협의의 운영	
등어온산업과	안전류관계	7. 만방뭐 계획수립 시행	
동연흥산범국 .	반선송광사		_
높이존산업국	안전충찰과	9 인생의 교육훈련	_
동미른산업국	안전출광파	10. 면방위 시설장비 관리	
동이촌산업국	안전충관과	11. 주민 신고당 관리	
뉴머존산업국	안전류관리	12 등화관계·유향관제·비상방송계도 운영	
송이존산업국	안진송관과	13. 반세등 판과 한 관리 시 명	
농머촌산업과	안전문관과	14. 동원등력관단자료 조사	
농이존산업국	안전충점과	1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돌이존산업학	안원중관계	16. 고창군의용소박연합의 및 유민의유소방대 지원	
문어존산업국	안전중관계	17. 에비군육성격원	_
눈이손샀되 孝	반건품판의	18. 군부대 관련 업무 및 특별사법장을 지원 등	_
물의출산되어	안정플래카	19. 계해유급하구 계획 수밖	
농이혼산업국	반전문판과	20. 계례응급복구에 따른 응급복구비자원	
告어혼산업학	业场条证 种	21. 계해범업자구격장배계 및 사업법행	
동어촌산업국	한건문관계	22. 제해쒸험지구 자장을 위한 바탕성조사용역및 소관지정시 협의법	34.
동이존산업국	반권총반과	23. 제해복구 유관기관 지역합력체제구학및 관리	
농어순산업국	양점수관계	24. 제단관리기급 집에 및 관리	
농이혼산업국	발생생활과	25. 제단원인조사 분석 정보	
농어본산업국	안선수관과	26. 장수배보험 가입공보 및 보캠로 자원	
		on bally to the state of all the state of th	
医创造处理证	항권중관계	27. 제난관리시스템에 확장된 사용시설 계난지원급 설치급	_
동어존산업국	반진종광과	28. 계해응급(공공시설)지역 군부대등을 묶한 복구기원	
是对他处理证	_ 性效必要进	29. 제해위험적구 제해적도 제작	
농어온산업국	반전종활과	30. 특별계단지역 신포시 작품지원제도 안내및 등보	
농어온산업국	안건충단과	31. 사유시선 제해대장 제작및배부	
중이온산업국	학생중관계	32. 제해복구 유판기관 지역협하체季구축별 관리	
동이손산업국	안전종환과	30. 선수존적도 제작 관리	
教の各種財産	22. 经基金额	34. 군 인천관리위원회 및 제단인정대회본부 구설운영	
	안전송판과		
상이손산업국 **이 투사인국			
농어혼산입자	건건충량과	36. 계례사건대비	0.00
물면 하기를 만했다.	中共委员体	37. 계산대비 용가 사망 장비과학 및 개산단계 규모 유혈별 동물계의 수입·	6.9
참이존산업국	안건종효과	38. 계난관리 안전문화 경약을 위한 교육·충보 프로그램 개밖·보급	
농어존산업국	经验带业件	39.	
농어촌산업국	안전중단과	40. 재단위원자정시설을 및 목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동이존산업국	안전송광파	41. 의역자유방계단 교육·송현	
눈이손산별국	안선중단적	42 사진계배양합성경보 혐의운영	
동이혼산성국	한천중황과	41. 유도한 안전반의	
불어온산일당 보이온산일당	22.22 등 한 가	44 수상대의 안전박관리	
높이존산입국	인진중관리	45. 시설상(고향, 건물)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권병	1
늦어혼산업곡	반찬중황과	46[국가위기관리	
동연출산업국	分划安置机	47.[악선관리세티-순류	
동이존산법국	안권중관과	48.[안핑관리 편문인의 세계 구축	
동이존선법국	안선상됐게	49. 제단대중 안전했국훈원 주관	
눈이본산업국	방원충관과	GO, 제장법 양년단리대권 수립 및 제단리네 자원관리	
상이존산업국	일선문발제	51. 사회의 계단함부 형편	
동면은단험국	연선중합의	52. 제단대비 유선기관 업무협조 및 기원체제구속	

	무서별	및 사무	11] [11
동이존산업국	반전충현파	53. 지역축제 사전 제해대의계획 심의 및 연장점점	
등어른산업국	안천중반파	54. [자연재난 유명별 표준행동 배뉴일 작성 및 취합관리	
% 이 손산업목	안천중관폐	55. 자연계산업무 인반	
동어촌산일락	안전종괄화	56. 처난 해정보시설 관리운상	
동머존산밥국	안원송활파	57. 고장기상대 업무텔리 및 일인기상실광 파악	
공어관산업국	안원중관과	58. 제난환리살때 공시	
농이존산업국	안전통합과	59, 사회재단시 선숙한 초등대응을 위한 모니티요원 구성 운영	
농어촌산밥때	맛진출봤과	60. 작물재단에 대한 사후조사 및 사례 분석 전파 등 기학관리	
농어존산업국	안전음판파	61. 제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원단, 초등조의 및 기위	
농이콘산업국	안전충광복	62.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필수 진과	
농이온산법국	안전출광과	63. 내난 위기장후 분석 제가 경보방력	
농이혼산업국	안전충분과	64. 제난관리캠보사스텔 이용실적 관리 및 문식에 판한 사항	
높이혼산업국	안전송광과	65. 세난감시용CCTV. 수양계 수양계 등 관측정보 장미설컵, 모디터링 등 관	10
농이존산업국	안전총관리	66. 형에주기병 안신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幅계획 수밖,시색	
농이혼산업국	안원총광의	67. 국민안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동어혼산업국	안전송관리	68. 다중이용시설 등 인간소유시설 위기상과 메뉴얼관리 등 안전간의	
등이론산업국	안건충받의	69. 안전산고업무 충판기의 및 사행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어촌산업국	안된증판과	70. 안전신고 평가업무	
동이존산업국	안전충판가	71. 안찬성고막대이터 등 정보파 면제주진	
눌이손산법국	안전출판과	72 안정신고시스템 관리일부	
상어온신법국	안전충받과	73. 알린성고 처리 범항 파악 및 전파보고	
뉴어손산입국	안전충발과	74. 안전신고 모나타림, 형창전경 및 건글조의	
동어온산업국	안전충판과	75. 안전관리협사회 구설 및 운명	
농머존산영국	인천중관과	76. 안찬신교에 날 맹사 추진	
등이손산업국	안천흡괄화	77. 방계안된마을 만들기 사업 개원	
상이온산었다	인민송관계	78. 중수에 피해예측시스템 구속 운영	
뉴어혼산업국	안전품활과	79. 건급지원체계 구축 관리에 관반 사항	
농어온산업국	안전충판파	80. 기존 공공시설용 내진보장대체의 수립 시생에 관련시장	
동이손산업국	안전송관리	81. 하수계난 협업기전 관리 중합계리 및 시스템 수립운영	
등어른산업국	안전통관과	82. 복수제단 제단역량 문식 전단 및 교육 운전 지원	
동이온산업국	안원충활파	B3. 목수계난 발생시 지대본 등 지만	_
			100
높이존산업국	안전중관과	_ 14 사회계난 관련 지역개나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반체계 구설 및 8	36
동민준산업국	반천충판파	85. 지자에 주면대상 안전되자 설식	_
눌어온산및국	안성용활과	86. 이런이 늘어시설 안전될겁	
등이손산업국	안전증절과	87. 술장기 안전점점 및 관리	
동이온산법국	안원충권하	88. 하천정비관리	
돌여존산압국	안전송광측	89, 지방하면 취·사용하기	
놈이손산업국	반천종광파	90.[조하된 캠•사용비가	
동어온산업국	안성중괄과	91. 지방하던 장비사업	
농이혼산업국	안전충발과	92. 하도준실사업	
동어온산법학	안천충판짜	93. 이 원기성계 광배	
동어혼산업국	안전충활과	94. 자연박 화전사업	
농어온산업국	한천중관리	95. 팔대하현 조심사임	
동어본산업학	안전중합의	96. 배형 및 소화형 유지관리	
동이존산업국	안전송반의	97. 배전부터 마부·매각	
동어산산업국	안전충받자	98. 8번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동어촌산업국	안전충발과	99.[하선낸 언도시회 관리	
동연혼산업로	산천중관과	100. 비관리성 하천공사 관련	
농이존산업국	公司要用平	101 소화된 캠비사업	
동이존산업국	안원종합과	102 소화된 중합계원수정및 관리	
告이는산업국	안전충산과	103. 의원계례에방사업 시센	
동위존상업학	안선생산 발과	104.[하권원장 캠비사업	
동이존산방국	반선증받다	105. 백천부지 부상 양이, 글이	
※明色分別等.	양천생세관	106. 공세계취예장지 고사·하가	
등이혼산업무	안전하셨다	107 글제재취임 등목	
장에온신입국	안전하였다	108. 문제계위 역가 및 신교	
동에본산성하	한천총환과	100 원선방사는 방계 대적 계획 수밖 및 시행	
상대본산업국	0.94-459	11년 발사장 약호시장 약호 관리	
No. 1 S. L. L. S. C. C.	A STATE OF THE PARTY.	A STATE OF THE PROPERTY OF THE	

국별	부서별		웹 사무	(01)-22
눌어온산업돠	안건충반과	111	원진주민지역 의원사업 및 하밀회계 관리	
동어콘산업국	안전중활과	112.	박사는 방계 교육 훈련	
동이온산업국	안천출발과	113	원진비상계획 구의 내 주민보호 대책	
8이존산업국	안원중반의	111	원선기본계원사업 시성을 관리	
		1.15	MANAGE AND	
※어혼산법국	안전종광파	1,630	그 밖에 원전에 관한 사망	
동어촌산업국	안건중판과	116.	안전관리 상시 취검·관단 등 제단현장 설검·대응	_
W 이존산업국	안전충합과		재난한전 거버넌스 구축·운영	
농머촌산업국	안전출판과	118,	격하안전법 및 기반시설법 관련업무 전반	
동이존산업국	안전충받기	119.	국유계산(국토교통부, 하선) 사용,대부계약	
농이온산입국	안전등관과	1.20.	중대계해서별별	
농어혼산업국	안원충분과		기능민족상 계획 수정	
불어온산법국	안전송판과	122	지자체 항통생기 지표관리	
	안전축받다	123.	지역한권도 평가	
농의혼산업국				
쌍어온산입국	양천상됐과	124.	계사관리계가	
뉴이존산업국	안전충팔파	125.	지역맞춘병 조립 추진	
농이존산업국	안전충팔과	126.	· 배산·파입보임	
告이찬산업학	안선품광과	127.	[관토/전 인권료장	
동이혼산업국	안권함함과	128,	제단기본소득지급	
놈이른산업하	진설도사과	10	과 업무 중합기계 조정 및 예산회계 합만서부	
불이혼산립학	건성도시와	2	권성기계 유록 및 사업자 관리	
동이존산업국		- 2	정도구의 관리(도시개의구간 웨이)	
	건설모시바.	175	도로 관리(건설장비관리·도로보수원관리)	
농어혼산업학	건성도시판	.4.		
동어촌산합국	현실도시의	- 5.	도로유지산의 (미에산 사업)	
농어촌산입학	건설도시위	- 6,	도로표지판 관리	
돌어촌산업국	건설도시와	7.	어또장 도로 사리부성	
동이존산업국	건성도시라	116.	권국도로 교통량 조사	
놈이관산법학	편설도시계	9.	간성관련 국·봉유행설계한 관리	
동이혼산업국	건설도사과	10.	국-지방도(비복용지)보상 및 이원등기	
중이존산업국	원성도사회	11.	제인사망 관리	
뉴어존산업과	건성도시계	1.2.	노취상 및 도상적의할 자료·단속	
	원실도시파		[25 H of Al 20 0] (1 H of Al 20 6 H)	
동어촌산업국		13,	국용계산 권리보전 (건설교통무)	
돌이온살였다	컨설도시카	14.	선물건성일 관리 및 등록 선고수리	
동의존산업국	건설도시판	15.	독매장고품 관리	
농어촌산업록	건센도자과		도로집표 신고하기 및 임용료 무리-경우에 따른 사후 관리	
安어온산법국	건성도시계	17.	사도개설 해가	
동이산산업국	건설도시파	1.80	중업용수 개발	
농이존산업국	권설도자과	19.	정치장리사업	
동어존산업국	건설도시과		수라시설 계•보수	
동어혼산업국	건설도시파	21	계간 이가 및 지도	
놀이온산업국	전설로사파	22	라를 들자계람사업의 집행감독	
		99	Interest of the Control of the Contr	
눌어혼산업국	건성도시까	400	한해대책사업	
불인혼상법학	객실도시판		계수기반 확중사업	
농의존산업목	건설모사관		[관련업무 국·봉유백경제산 관리	
등어존산였국	간센모시과	26.	방 기반경비사업 집생간목	
동미존상법국	건설도시하	27.	기계화경작로 뭐 로상	
높이존산업국	건성모시가	28,	대·소설관장 개발시험 결제감독	
불어온산업국	전설보자파	29.	양-배수장 집행사업	
뉴어순산함국	건설보사과	30	소유의 유지관리사업	
등어른산업국	컨셉토시파		메수계선사업	
S어른산법국			방조제 개보수사업	
	- 작성문설립			
동이존산업국	런성도시파		오기계방 사업	
상이존산법국	司封耳马孙		경기성의 지구내 등로및 유배수로 유치관에서임	
등이존산합국	건설보시다		한발대비 용수계발사임	
농이존전입국	런설보시파	36.	리표수 보장계반사업	
돌여존산밥차	관심도시계		삼뮢지구 조심보지 배작대급 관리	
동이혼산합국	원성모시라		동영기반지한 등록 및 관리	
용이는 단었다	过载压利的		교도 및 높이손도로 중심기 계획 수립	
동이본산업국	전설로시계	1797	군도 및 돌아온도로의 취임도로 선생생활사업 주면	

국별	부서변	명 사무	11 22
상이온산업국	원설동시과	41. 군도 및 중이존도로의 교충사고 붉은곳 개선사업주건	
중이존산업국	건선도시와	42. 군도 및 놈이콘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사업 추진	
F이존산법국	컨설토시과	43. 군도 및 등이촌도로의 교량 유지관리 및 개당시입 추진	
아이존산업국	건성도시과	44. 군도 및 동어촌도로 장비사업 용지보상 및 이전 등기	
어혼산업국	건설도시파	45. 도로구의 결광교시	
5어혼산업국	건성도사과	46. 군도 및 등이존도로 비판리정사업 법의 및 하가	
우어온산업국	건성도시의	47. 타기관 시센사업(도로)업무원의 및 주진	
F이곤산입국		48 분도 및 중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추진	
	건성도시와		
등이존산성국	컨성도시파		
동어존산업국	건설도시와	5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세경비	
농이혼산업국	경설도산반	51. 국토이용계사의 있안 및 변경 전쟁	
용이손산업과	건성도시파	52. 도시계획시장 및 사일 결강한 변경권계	
문어소산업목	건설도식파	5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입가 및 지도	
#이온산업국	건설도시계	54. 库利曼相	
뉴어콘상임국	건성도시파	55. 도시계획 법인 및 규칙 등에 관한 사항	_
농머혼산업국	건설도시파	56, 도시가보방 권미(도시계획도로 및 장기미집엔배수권구)	
동어온상업학	건성도시관	57, 자전기도로 개비	
중이존산업국	간성도시파	58. 택자개발 및 구획질리사업 수법 및 관리	
5 어온산업국	건설도사과	59.[개방속관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F 여존산업국	건설도사라	60. 기반시설부탁급 부과 및 경수	
동이손산업국	원생도시파	6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 이혼산업국	건성도시하	62. 소도옵 육성사업(관련 공업주차장 조선사업 포함)	
동이론산업국	건성도시파	63. 수용치역 및 시험치의 개반사업	
동어본산업국	건설도시파	64. 옵면까기회관 모장 등 공동시설등 관리	
*이온산업국	건설도사과	65. 비 법정도로 사실 및 관리	
동이온산밥국	건설도시파	66. 동로개설사업 주관 및 관리(참기정리지구 위)	
동이존산업국	건성도사과	67. 마음 전입로 및 안집 닷의우리사업 주건	
동이본산업국	원성도시파	68. 시가지 보도분씩 정비	
동이는산업국	전형도시파	69. 소규모시설관리 및 수례씨구 추진 등 세에게판 업무 간만	
높이는산업국	건성도사과	70. 권산계의 수립 및 분업	
동이본사업국	선실도시파	71 공공미자인 전용계획 수립 및 운영	
w이존산업국	전성도시계	72 도시계생 전략계획 및 환성화계획 수립	
		73, 도시계생 유당사업 시행	
농이는산업국	건성도시파		
불어혼산되다	건설모시파		
동이손산업국	- 강성동성관	75. 하약의의 생활이건 계조사임	
농이존산업국	<u> 경험본실망</u>	76 U.A. U.D.	
무이존산압국	컨설도시키	77. 버스 전반(대중,전세)	
농어혼산업국	건설도시파	78, 짜볼 전망	
동어간산업국	선생도식과	79. 자동차 장미, 예계, 폐차법	
눈이산산밖국	건설도식과	80. 자동차등의 관련 업무	
등이존산법과	컨설토지과	81 이 패턴비선 판의	
F 이 찬산업국	건설도시관	82 교통사설등 설치 및 관리	
동이존산법국	건설도시와	83. 가모등 설치 판의	
상이혼산업국	건성보시관	84.[중개업, 주산업	
동어찬산업국	건성도시와	85, 무단맛의 차량 관리	
동어촌산법국	건설도시와	86, 교통점시 화범	
동어찬산업국	건설도자관	87. 공용주차를 심치 및 관리(학중 사업관련 주차장설치 제의)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와	88, 유가보조금 처급	
7	20.25%	1. 보건소 역부의 기계·조정	.अ. २१ मा थी
	地名达	2.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람	보건생절
	规划企	3. 공통보건의사 제치· 하루 및 업무지도에 환한 전반	보건병원
	12.013	4. 보건기관 시청를 관리에 관한 사항	私亞性後
	从 社会	5. 보건함부 접수·수납·성구·제품의 방급	보건택장
	0.35.6	6. 작의보건의료계위의 수정	12.21.01.31
	たける	7 말반시구 및 기옥문관리	보건했다
	是社会 经营业 是资金	요. 예산회계 간리 요. 보건업무 통계관리 10. 12이존의표시비스계선사업	以自由4 以自由4 以自由4

母祖	부서별	퇴 사무	Ma
	M.社会	11. 그 밖의 군인보건에 관한 사항	10.22.增强
	見過去	12. 의료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생님
	足过去	13. 의료기식에 관한 시항	思想傳致
	が行命	14. 응답의보기관에 대한 사항	보건하기
	# Z &	15. 약무에 관한 사람	建设槽型
	発性を	16. 바마큐 관리에 관한 사항	見犯罪者
		10.197 PH 111171 B 11 71 11	26-52 11 8
	보건소	17. 보건에 관한 설명 또는 권사에 관한 사람	보건행정
	보건소	18. 복수의표장비 및 전단을 방사선발생장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책람
	単型企	19. 미표법인에 관한 사람	보건했정
	보건소	20. 법정감염병 및 자장감염병의 예방·관리	보건별경
	現代法	21. 전트기에게집합병 관리 및 예방중보	見程明改
	보건소	22. 본일: 한병질한 불급실 감시체계 분명	보건명정
	보건소	23. 반생명 관리	보건생님
	보건소	24. 방역소중업무 및 소독업 관리	化使作品
	보건소	25. 국가예방점을 및 인시예방점을 관리 26. 간염병 위기관리대표 수립	보건행정
	2015年	26. 강염병 회기관리대표 수립	보진행광
	보건소	27. 감염병 위기대비 비족문자관리	보건했정
	보건소	28. 원백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팽팽
	起烈会	29. 생님에서 대통관이	M-37 W 78
	ませる	30. 조취인플루엠치(AI) 업체장및 예방관리	11 51 90 51
	处别业	31. 설명 및 후원설만의권명품 관리	起便野速
	北竹北	39 [기재추가연증 조사 및 예바용원	\$2.24 48 75
	2.5.1	33. 지역주민 전료에 관한 사람	보건생명 건강증진
	20.00	33. 되역주민 전요에 관하시다 34. 정도당 무료 순평진로	건강중건
	보면소	35. 국가 안 결진사업	건강하신
	보건호	36. 안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망	건강등전
			건강합신
	基性市		11 24 H 12
	M.C.S.	38. 제가 압환가 관리	건강증진
	38.81.4	39. 미귀난의심권환자 이료비 지원사업	건강한건
	2.23	40 불압부부 지원에 관한 사람	본장등전
	보건소	41. 잘에양 제발 사업	건강증권
	是初至	42. 국민건강중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건강증권
	北方五	43. 영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从初海	44. 한파막건강증권시엄에 관한 사항	건강장전
	北西北	45. 운동사업에 관한 사항	원상투원
	见进走	46. 국가 당면서비스 지원사업	건강분진
	担党点	47. 접근사업에 관망 사항	건강률정
	보건소	48. 반성화행성집환자의 공명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권
	思想為	49. 노인보건 관리에 관련 사항	건강충전
	보건소	50. 가격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건강증권
	22714	51. 모자보건사업의 세무계획수립 및 시행	건강중권
	基党会	52. 영유이 관리에 대한 사항	건강중정
	소용보	53. 법산부의 산권관리 산투관리	천강출진
	SMORTERS.	54. 설권성대사이상이 권사 및 활아관리에 관완 사망	변상충성
	보원소	55. 출산지원에 관련 사학	원가족원
	0.754	56. 클로 선생이 도우미 기위사업	건강증권
	無視金	57 구강보건시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58. 정신권환자 관리에 귀한 사람	건강증진
	MREA	55. 치배환자관리에 관한 사항	전하는
			41.8.8.6
	눈일건호센터	1. [송촌자도사업 소환텔정의 중합기리-조장	
	美립기술세비	2. 동은기도사위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기	
	美설건호센터	3 동업기술센터 형사에 전한 사항	
	美質其金組制	4. 동업가술센터 예산운영 및 선도된 관리	
	농업기준센터	5. 동업기술 배터 소란건화 시설·장비·바람들 배산관리	
	专引力克州时	6. 문서수밖 및 공인관리	
	동생각순쇄비	7. 소속공부인 작무단속 및 관리	
	- 독업건술센터	8. 소대 비를 및 소모를 관리	
	[독업기관계원]	요. 그 밖에 보안성 시작점부 선반	

世田

母雙	무서별	및 사무	10] 23.
14,774	장업기술센터	68. 농촌자원활용 소득원 개발 자도	
	농업기술센터	69. 불인염색 연구의 조직 육실	
	동업기술센터	70. 전쟁규발곱에 인구의 조직육성	
	농업기술센터	71. 동촌이에너티 활용 기술자도	
	농업기술센터	72 도시민 유의 계원에 관한 사항	
	동합기술센터	73. 귀등인 정차지원에 관한 사항	
	중업기술센터	74. 귀농권은 유치 홍보에 관한 사람	
	25 Olad do 40 m	42 (4.9 (4.2) 4.4 (2.2) 4.5 (4.1) 4.4 (4.9)	
	농업기술센터	75. 위송 박밥의 참가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장	
	동네기술센터	76. 에비 귀돌인 상담 기원에 관한 사람	
	농업기술센터	77. 귀돌귀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상업기술센터	78. 귀농귀은 완전 D/B구축에 관한 사항	
	눈악기술센터	79 귀높인 얼품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자원	
	공업기술센터	80. 귀농인 광었지원에 관한 사항	
	동위기술센터	81. 귀농귀존인 및 현지주면 화합에 관한 사람	
	동입기술센터 공입기술센터	82. 고창군 귀농귀혼지원센터 설치 ㆍ 운영	
	농업건술센터	80. 고창군 귀등귀족합의회 지원에 관한 사장	
	농업기술제터	84.[유민 귀등귀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동입기술센터	85. 그 밖의 위통귀춘에 관한 사항	
	동위기술센터	86 [중여존등다운 업주의 사후관리(하지보수, 연연)	
	동업기술센터	37. 동어촌뉴타운 거뮤니티센티 운영 및 높은세팅시설 관리	
	동영기술센터	88. 세취형 중염증업과원센터 조심 업무 및 운영	
	등업기술센터	89 유가는 기술계반 및 보급	
	공업기술센터	90. 전환경등업 시험제에 및 기술보급	
		91. 한환경 동산물 관리지도	
	% 및 기술센터		
	동업기술센터		
	쑴 벷기술센터	93. 취망자용 기술기도	
	安保利金研科	94 年 年 全 年 年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농합가술센터	95. 식량작품 시험사업	
	상법기호생편	96. 고풍경 발 생산 저도	
	<u> 문업기술센터</u>	97. 식량작품 생략세배 영상기계화 지도	
	공업기술생태	98. 왕업기상 패레에밥 지도	
	**합기술센터	(9) 도착유 박해중에를 및 방제,기술 교육·등요	
	농법기술센터	100. 수도예광답 및 예찬성 운영	
	실명기술센터	101. 液管星外背望到 준明	
	꽃업기술센터	102 범례층 품발진단실 운영	
	동영기를 센터	103. 보양점절 및 토양개발 적도	
	동업기술센터	104. 동업판장계선대域 수립 및 시행	
	높임기술센터	[05] 방해중중합관리(IPM) 사업	
	상업기술센터	106. 의용양본중양관리GNM) 시엄	
	동업가술센터	107. 동약 안전사용 최도	
	동일기술센터	108. 동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한 영기를 센터	109. 동기계 합대사업 및 사업장 관리 운영	
	는 엄기술 센터	110.[동기계 동업인 교육 및 지도	
	*업거호센터	111. 배소안장생산 세기술보급 시방사업 지도	
		111. 배우 안정생인 세기품보급 기반기되 어두 112. 파수 안정생산 세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동위기호센터	112 과수 안경생산 세기출보급 시념사업 지도	
	중위기술센터 중위기술센터	113. 특용자물 생산 기술보다시었사업지도	
	2000年1月1日日	114 화해 세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눈업기술센터	115 실선제소 개메기숩기도	
	송법거호센터	116. 양액세베기술전도	
	동입기술센터 농입기술센터	117. 시선원에 에너지 잘라기를 가도	
	농업기호센터	118, 시설하우스 환경계신기술지도	
	一张常用金洲科	119. 시설하우스 연작장폐광장 포항관리기술자도	
	늘업기호센터	1201 노기제 눈 채매기중지도	
	· 생명기술센터	121. 전 현재소 연충생산세메기승자도	
	동업기술개위	122 화례계에기중되도	
	등업기순성터.	123 0 17 6 7 5	
	동법기술대단	184. 과수 계계가술 자동	
	돌면기를 했다	12년 원세자를 병해를 진단, 현체자도	

국별	무세별	팀 사무	10[-37
	농업기술센터	126. 복용극물 계배기술지도	
	농압기술센터	127. 산세류 제배기출자도	
	동업기술센터	128. 고를질등산물 생산 수출자도	_
	동업건술센터	129. 농산물 지장기술자도	
	농업기술센터	130. 동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보급	
	농업기술센터	131. 원에 작용별 연구회 조미육성 및 기술자도	
	중엽기술센터	132. 신규 소목 작목 개발 보급	
		133. 작용작물 자역적용 설중시민	
	농업기술센터	155 15 2 3 4 3 3 5 3 5 3 5	
	*업기술센터	134. 동일기술 현장실습 교육	
	중업기술센터	135, 과수 새로운 수행 개발을 위한 성증시범죄배	
	중엽기술센터	136 고추, 수박 역명 방지를 위한 새기술 개발 실종 개배	
	농업기술센터	137. 실종시범보 운영	
	동업기급센터	128, 새 소득자목개발을 위한 실증시발개배	
		the long of the state of the st	
	36위기술센터	139. 수마 민중생산을 위한 작기 개발 실증제배	
	동업각숲센터	[40] 이밀과 실증제배	
	농업건균센터	141. 판매시료설운영	
	농업기술센터	142, 옵편별 지역복화 시발사업자도	
	동양기술센터	143. 국산기술보급 및 기술계도	
	260121.0.002		
	동업기술센터	144. 숙산시범시업관원	_
	중설기술센터	145, 사료작품계배기술자도	
	동업기술센터	146. 목문자 패배 시험연구	
	동악기술생태	147 복문가 생산단세 및 연구의 조직 운영	
	농업기술센터	148 복본과 생의-생태에 관한 시원연구	
		149 복산차 방매중 방생 원인 구멍 또 방계세계 연구	
	동업기술센터		_
	光質初余個時	150 복분가 제배 기술 상담	
	동업기술했다	151]목본자 시미법 및 유가제배법 기술개발	
	동업기순센터	152 목문자 제배 기술 중가보급 및 교육	
	동일기술센터	[53] 복분자 유권자원 수집·보존, 복성조사	
	중업기관센터	154 회문과 신항을 사용 시험 연구	
		1391 700 71 20 80 71 80 71 80 21 1	
	눈업기술센터	155 복문자 선육성 통충 사설 모장 관리	
	동업기술센터	150 목화작목 목비 출인 및 등록	
	동업기술센터	157 목화작목 목의 기술 이전	
	농업기술센터	158 교구마 중순 생산기반 구축 운영 및 생산 공급	
	설립기술센터	159 고구야 등 조리배방시험연구활동	
	苦氧对象侧时	160 박생물배양장 운영및 생산 공급	
	동업가술센터	161 중산물 만원성 문석업무 판반	
	동업기金센터	162 문식장비 운영관리	
	동일기술센터	163 농산물 안원실에 대한 뉴가 원설팅 및 교육	
	상업기요 센테	164 부처럼 농산물 시대관리	
	36-01 at 52 at 12		
	世업기술센터	165 문학수수로 세일 저희	
	동얼기술센터	166 그밖에 등산물안전설문석에 관한 사망	
	刘寿科替朴曾北	1 사업소 소관업무 중합기계 조점 및 예산회계 달만서부	
	재작시설사업소	2 제육지원의 중합기획 조성	
	계속시설사업소	3 선문제육활동 욕심 및 지원	
	계속시설사업소	4 체육단체 육성자원	
	체괄시설사업소	5 체육관용기급 조성 및 운영관리	
	계속시설사업소	6 각종 국내·국제 제속대의 유석·지원 및 계취	
	재육시설사업소	김 생활체육관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	
	배육시설사업소	8 생활세속 중의법 합의 및 극중 생활세우대의 순정 지원	
	제목시설사업소	9 상해인 및 노인배축에 대한 건공계리수임 및 직원	
	배육시설시업소	10 체육시설업 등록, 선고업무	
	페육시설사업조	11 스포트린의 등록 외부	
	재퓨지설하업소	1일 식장운유럽기부 분양지원	
	제육사용사업소	13 그 밖에 제작업무에 관한 작명	
	계획시설시업소	14 작용 변자문인 유지 및 관리	
	제작사설사업소	15 대포스 원성과 프로그램 운데	
	用电对量外错定	16 报准录电池划星	
	생유지상사업소	17 공문제작시설 확률 의원	

母蛙	부서면	밥 사무	M-30
	제속시험사업소	18 공공제육시설 국민제육권흥기급 지원사업	
	제목시설사업소	19 공공책육시설 체육관류시설 지원사업(군목)	
	제유시설사업소	20 기타 공급체육시설 관련 국가예산 사업	
	체육시설사업소	21 기존 공급체육시설과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관리지원	
		90 Peter 4.0 A 212 A 21 A 21 A 21 A 21 A 21 A 21 A	
	제속시설사업소	22 장에인세탁시설 관련 입부	
	제품시설산업소	23 공공세육시선 하자보수 관점 업무	
	제육시설사업소	24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재육시설사업소	25[골문세탁시설 대판	
	재육시설사업소	26] 공문제속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체육시설사업소	27 소규모 생활세육시설 조성사업	
	세육지성사업소	28 아파운동기구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제육시설사업소	29 군 소유 제작시설 위탁운일 관리	
	계속시설사업소	30 공공배육시설 안전병경 추진	
		00 5 6 44 4 18 E S 8 2 T E	
	제육시험산업소	31 공공세계시설 국가인원대전단 추건	
	제육시설사법소	3일 광공세속시설 시독법 경기안전점값 반현 업무	_
	제육시설사람소	33 선종예방지점(코드아당) 교육훈련	
	세육시설산업소	34[체육시설 인력 관리	
	체육시설사업소	35] 산막자전기 공원 운영 관리	
	세육시설사업소	36 그 밖의 소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1 사업소 소관업부 중합기획·조건	
	상하수도사업소	2 장수도 공기업회계 예산원성 및 광산	
	상하구도사업소	3 상략도 공기업회계급과 선정 및 관리	
		137 F 3 73 3 3 3 3 3 3 3 3 3 4 4	
	상하수도사위소	4 상수도 굴건일위계 정면찍간	
	상하수도사업소	5 성수도분야 공사 원역, 문품 구매 계약 및 일상	_
	살하수도사업소	6]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상 검색 및 직원 급여 관리	
	살하수도사업소	기상하수도 사용고 점점 및 꼬리, 부과 전후 및 배납자 관리	
	살화수도사업소	8 시업소 비俗 및 소모를 관리	
	상화수도사임소	D 살하수도 교육관련 업무	
	상하수도사업소	10 分中五, 丞相, 计句, 务用役司	
	살하수도사망소	11 그 밖의 타 팀에 속하게 많는 함부	
	장하수도사업소	12 수도전비 기본계의 수립	
	상하수모사업소	13 관련 지방상수도 사업관전	
	상파수도사업소	14 장역상수도 예문방 원리	
	상바꾸도사업소	15 소파인 설치 및 관리	_
	살락수도사업소	16 상수도 시설문 관리	
	강착후도사업소	17 마음상수도 및 왕이른 방환용수 유미+관리	
	상하주도사업소	18] 박는 을 수집관리(상후도, 간이상후도, 약후터 등)	
	상화수도사업소	19 최수물 청소염 신교수리 및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0 비상대비 꾸용소통이 비속 관리	
	상화수도사업소	21 단수기의 홍보 및 박는 윤 공급 대책 시행	
	상하수도사업소	22 지하수 개발 및 신교 의가, 시공업 반리	
	상하수도사성소	23 급수공사 대행업 시장 및 관리	
	상파수도사위소	24 살수도 가정권수공사 및 누수 공사 시행	
	상화꾸도사법소	25 상후도 행정서비스현장	
	상하수도사업소	26] 하수도장비 기본계획 수립	
	상하수도사람소	27 하수품받처리장 운명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8]마블모수처리시설 운명관리	
	살화수도사람소	29 하수를 발처리시설 시설공사	
	상화주도사법소	30[마문까수처리시설 시설경사	
	상하수도사업소	31 동어론 마음모수처리 사항공사	
			_
	상하수도사취소	32 하수관기 정비사업 추천	
	상하수도사업소	33]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식살을 관리	
	상하수봉사학과	34] 차림반로 유지판의	
	상하수도사성소	351배수설비공사 선고수리 및 중앙	
	상하수도사람들	36)하수도 충성	
	상하수요시험소	37 M + 52 H CCTV #41	
	상하수도사성소	38 前至5. 注明, 计图, 使用更引	
	4440444	39[바수도 위인자부탁급 부파장수	

국병	华州坦	밤 사무	10] 31
M	作科学之	1 발간 업무 기획+조명	
	습사무소	2 소속공무원 복무단속	
	출시부소	3 사무-포만-단속	
	용시부소	4 八洲 豪总	
	6444	5 (1) (2) (3)	
	各사무소	6 의 생각 기도 : 단축	_
	音시무소	7 햇성광비: 햇성사무 관리개설	
	유사무소	8 번계 정리	
	40. 件基本	9 변방위 관리업무:	
	各分平之	10)등계 조사	
	各对外点	11 長州 中登	
	흡사무소	12 예산 및 경리 업무	
	음사무소	13 청사 관리 및 물품 관리	
		19 37 34 8 8 8 34	
	登 州東交	14 선거 및 국민 무표 일본	
	各分学之	15 취약 및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各사부소	16 공인에 관한 업무	
	감사부소	17 세육·세력증진 업무	
	음식부소	18 세났지방세금 목속 및 경수	
	0473	19 세화수업 경수	
	各种基本	20 相相認利	
	公 4平主	21 개발꿈시지가 일반 및 권정봉지문 교부	
	장사무소		
	휴산문소	23 기초생판보장・자료・노인・장매인・마물지만 업무	
	상사꾸소	24 모부자가장 직원, 복자대상자 사례관리 산원 및 경우	
	份州华太	25 여성관련업무, 무의예상·개장 신고, 고유·주기관련 업무	
	휴사무소	26 노인 일자리사업	
	집사무소	27 그 밖에 주면복지함 업부	
	습사무소	28 선임병관과 및 각종 질병예방에 관원사학	
	0.49-2	20 가족관계상록 입부	
	휴사무소	30) 주민등록-인감-제증명 방급	
			_
	유산문속	31 망과자 및 과산자대자 관리	_
	青丛学支	32 그 밖의 만았실 운영 및 만단판장에 관한 사장	
	급사무소	33 눈법·장업·식명·산원 업무	
	장사무소	34]가로우·후렘·상업·개방·육산 업무	
	省科学 会	35[전류·약전·기상관측	
	끊사무소	36 양곡 배급에 관한 사항	
	各分型生	37[송겨계만-수러시설	
	급사무소	38 공기업무	
	4.4.4.4.4	39 중입문수 개발에 관한 업무	
	A 사무소	40 권작장의	
	业分艺术	41 방수가 관리	
	라사무소	42 목자상에 관한 사항	
	者사무소	43 지역경제 발전 및 주진에 관한 사항	
	非科學生	4세 그 밤의 동업, 산업, 산림, 속산, 상공 등에 관한 사항	
	습사부소	45 사람지의 개함	
	옵시무소	46 낙후자의 개발	
	是对中亚	47 太星者 外學月	
	급사부소	48 등은 취막구조계선	
	유사무소	49 인국도문원하운쯤 주진	
	设计算文	50 불교를 관리 및 단속	
	操外 华生	51 자연보호	
	4.4444	52 세력증전시력	
	급사무소	53 건선생활에 관한 유성/지도	
	13.44.14.45	51 시역계반 각종 중사관리	
	黄科华女	55 개배에썅	
	2442	50 9.4 164	
	444	57 근처용 문제	
		21 27 3 3 3 4 4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휴사무소	58 등 신구에게 된다 업무	

可提	부서큄	밥 사무	用缸
	WALWA:	59 마음단위 비상급수대의 수립·시행	
	유사무소	60 그 밖의 천실, 도시, 제난, 장하수도에 완한 사항	
	유사무소	61 AQMX-M3	
	옵시부소	62] 한강원생 및 공해방의	
		62 N A M A G M	
	윤식물속	63 청소세계 업무	
	音小小生	64 그 밖에 환경형생·보건에 관한 역부	
	음사무소	65 핫마카는 복지상당	
	출사무소	66 복지사각자대 반당 및 지원	
	资料学会	6건등합사례관리	
	급사부소	68 년관립력 및 인적안전발 구축·운영	
	음사무소	69 지역자원 환글 및 면게 등	
	변사무소	11 팀간 업무 기획·조정	
	변시무소	2 소속공무원 회부단속	
	병사무조	3] 선무·비밀·인사	
	병사무소	4 공보·선원	
	반사무관	5 여운 명 중합관리	
	명사무소	6 반상회 운영	
	변사무소	7] 리팬짐 지도•감독	
	면서부소	8 행정장의·행정시부 관리계선	
	변사무소	의 법 제 경비	
	VIALA-35	10 문계 조사	
	면사무소	11 景景 中間	
	변사무소	12 국식 수반	
	맛산부소	13 예산 및 경의 업무	
	면사무소	14 절사관리 및 상품관리	
	が分かず	15 선거 및 국민부표 업무	
	변사꾸소	16 문화에술에 관한 업무	
	반사사소	17 민소계 체육관 관리 및 운영	
	理科學企	18 취하 및 유어교육에 관한 업무	
	면사무소	19 만방의 관리업무	
	보 사산소	20]소도유가모기·신발개선·낙후과역 개발	_
	변시부소	21 공존 취라구조계신 및 주택계량	
	인사가소	22] 광고물 관리 및 단속	
	됐시부소	23 지역개발을 위한 약중 공사관리	
	병사무소	24 제해 판계	
	UNALA	25 도시행장에 관한 사항	
	편시무소	26 제납지방세금 목속 및 장수	
	ガンカチ	27 세외수인 경수	
	면사무소	28 세위조시	
		and state of the property of the state of th	
	면사무소	29 개별공사시가 열람 및 권경복기문 교부	
	면사무소	30 8 9 8 21	
	전신부소	31 그 밖에 지방세업부	
	반사무소	32]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광매인·아동자원 업무	
	병사무소	33 모부자가장 지원, 하지대상자 사례관리	
	변사무소	34 여성환경업무, 묘기배장-개장 신교, 고용-주거관련 업무	
	면사무소	35) 노인 인자리사업	
	면사무소	36] 그 밖에 주민꼭지 법무	
	인사무소	37 전염병환리 및 각종 설명예방에 관한사망	
	변사무a:	38 사건보후 보겠	
	회사 분류	39 환경위선 및 공해방지	
	면사사소	40 初至似星	
	편사무소	411가족관계등록 업무	
	世科基本	42 주인등록 인간 계증명 방급	
	WANTED.	43 명하다 및 파산자대를 관리	
	野八十二	44 3 9 9 3 3 3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44 그 병의 원광실 운영 및 원광생기에 급한 시장	
	면서꾸호	45 등업·설업·설립·설립·업무	
	면사산소	46] 가요수-수립·살업·계약·축산 법부	
	141.6 No.4-	4가면요~염색~건살관측	

국별	부사인 반	됩 사무						
	면사무소	48 양꼭 제급에 관한 사항						
	변시투소 변시투소 역시투소	49 동자계량·수리시설 50 동가입무						
	변사무소	B) 동기업무						
	영사무소	51 목하에 관한 사항						
	전시무소	52 지역경제 봤십하						
	변사무소:	5억시장에 취하시하						
	면사무소	등리 산업에 과하 사자						
3 3	면사무소	55 천국도 공원화사업 56 바닷가 계소						
	면사무소	56 바닷가 계속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8월 12일

고창군 규칙 제 120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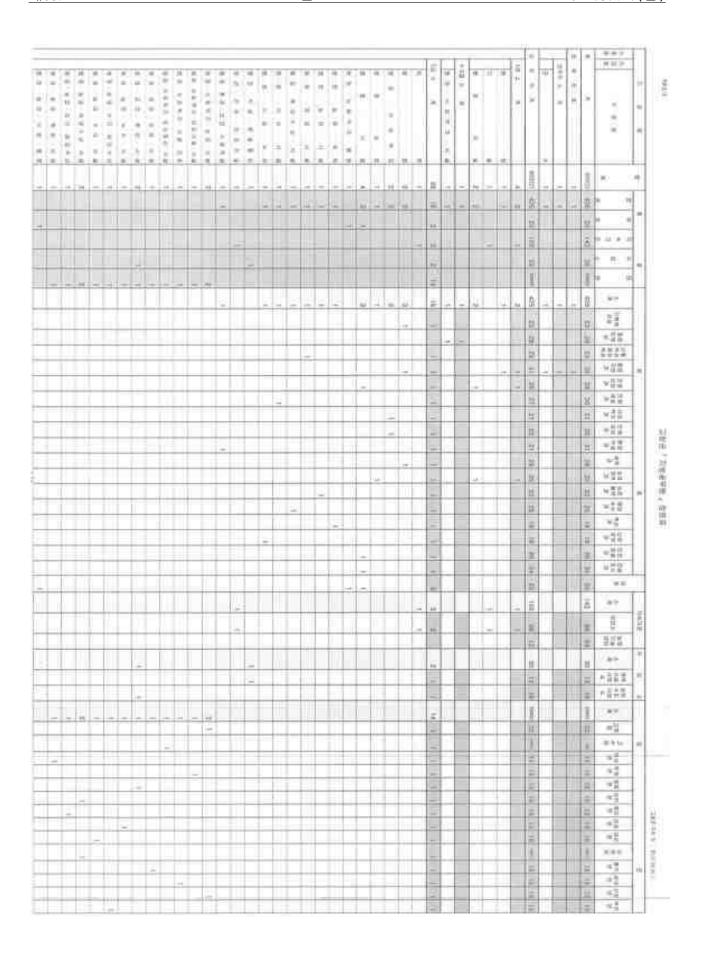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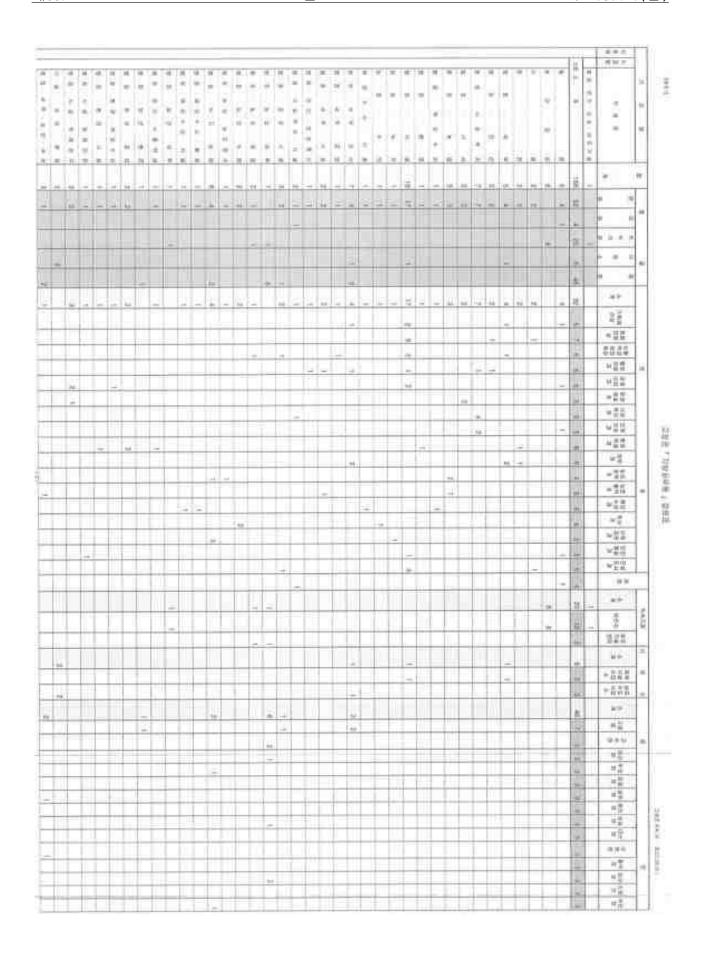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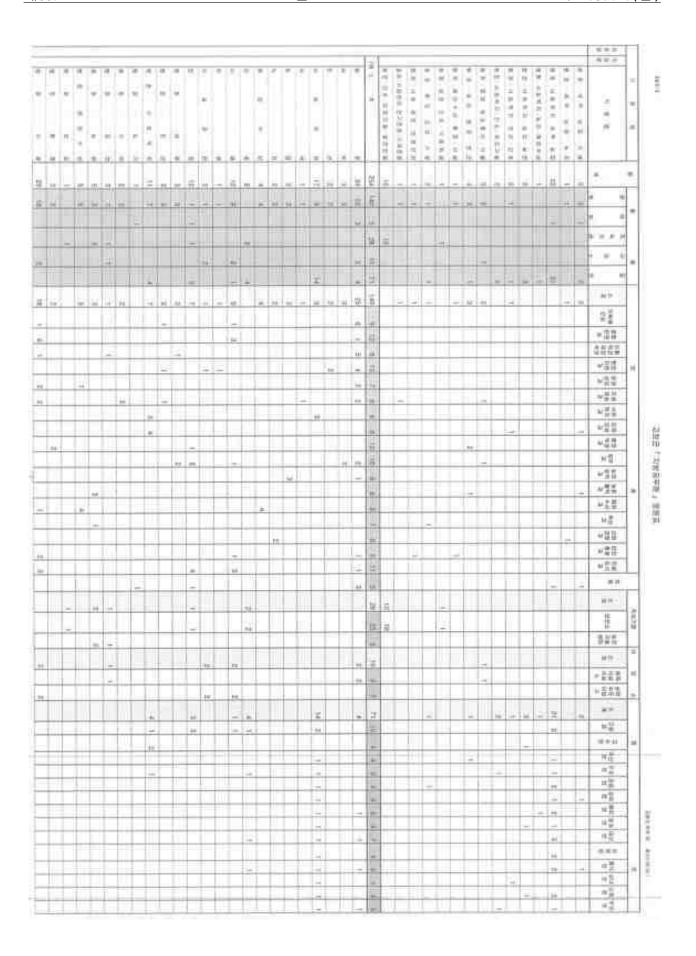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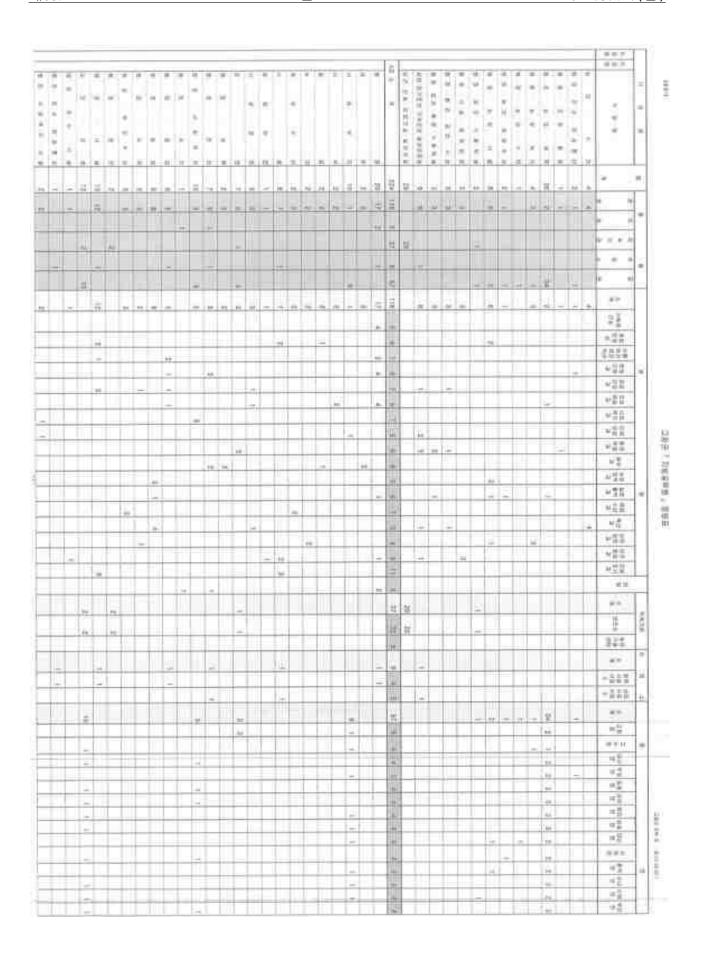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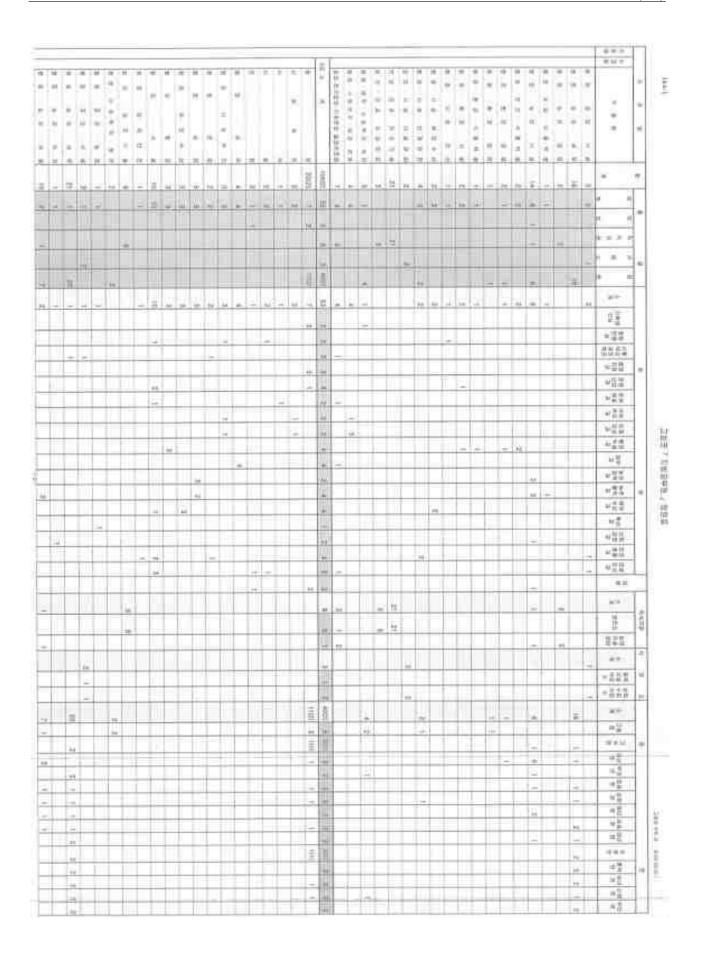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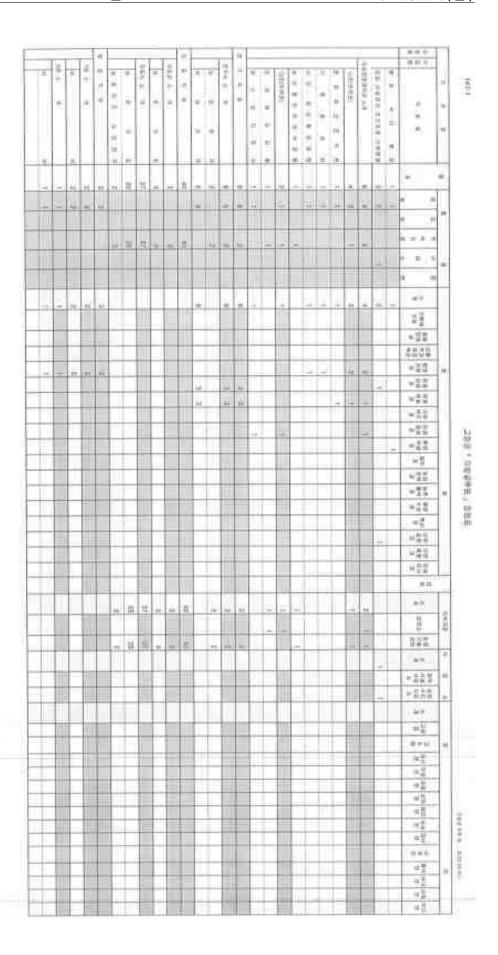












H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8월 12일

고창군 규칙 제 1201 호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국·과·담당관"을 "국·실·정책관·과장"으로,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을 "상위서열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담당관"을 "실·정책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2.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 ④ 지정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2)** -----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 부행정기관의 결원 ·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 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과·담당관 및 읍·면장 2. 국·실·정책관·과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이 대 위서열의 직원-----리하다.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대리) ① (생 략) 제3조(지정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담당관. 직속기관·사업 ② 실·정책관·과-----소・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만 명할 수 있다. 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 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

	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 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 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 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 한 사람이 없는 경우
<u><신 설></u>	④ 지정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
	<u>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고창군에 두는 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08월 12일

고창군 훈령 제502호

고창군에 두는 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창군에 두는 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각 과, 담당관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4조 관련)

부서명	팀 장 명	직렬 및 직급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대외협력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건축팀장, 허가팀장, 주거복지팀장, 지적팀장, 토지관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신활력경제 정 책 관	미래전략팀장, 경제일자리팀장, 기업유치팀장, 소상공인육성팀장, 청년창업팀장, 에너지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인사팀장, 군정홍보팀장, 정보통신팀장, 영상정보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관광산업과	관광진흥팀장, 관광개발팀장, 세계문화유산팀장, 세계자연유산 팀장, 생물권보전팀장, 운곡습지팀장	6급 공무원·학예 연구사 중 적임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문화유산동학팀장, 문화사업팀장, 도서관팀장, 문화시설팀장	6급 공무원·학예 연구사 중 적임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경로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장, 여성정책팀장, 청소년팀장, 아동보육팀장, 드림스타트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대기환경팀장, 수질보전팀장, 위생팀장, 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팀장, 소각운영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재 무 과	세정팀장, 경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세입징수팀장, 과표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부서명	팀 장 명	직렬 및 직급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원예특작팀장, 농촌인력팀장	6급 공무원·농업 연구사 중 적임자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장, 먹거리정책팀장, 농식품가공팀장, 유통팀장, 수출마케팅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장, 수산진흥팀장, 수산자원팀장, 해양개발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축 산 과	축산정책팀장, 축산진흥팀장, 가축방역팀장, 가축분뇨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장, 산림보호팀장, 조경육성팀장, 도시공원팀장, 선운산공원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재난관리팀장, 복구지원팀장, 하천관리팀장, 원전팀장, 지역안전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 기반조성팀장, 토목팀장, 지역개발팀장, 도시계획팀장, 공공디자인팀장, 교통행정팀장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별표 2]

직속기관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5조 관련)

부	서	명	팀		장	명	직렬	및 경	직급
보	건	소	보건행정팀장, 감 건강증진팀장, 진 보건지소팀장(127	료검진팀장,		팀장, 의약관리팀장 정신건강팀장	6급공 적	무원 임자	
농업	기술	센터	지도행정팀장, 농 체류형창업팀장 환경농업팀장, 경 새기술연구팀장,	제작물팀장,	특화작물팀장,	, , , = = = ,	6급· 지도 사 중]구

[별표 3]

사업소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6조 관련)

부 서 명	팀 장 명	직렬 및 직급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장, 체육시설조성팀장, 체육시설운영팀장	6급공무원 중 적임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상수도팀장, 하수도팀장	6급공무원 중 적임자

고창군 고시 제2022-96호

상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지정개	요			
지구명	위 치	유형	등급	지정면적 (m²)	지정 사유	비고	
상하 지구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936-4번지 일원	침수 위험 지구	나	261,654	자룡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월류 발생 및 수위상승으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침수피해 예상되는 지역임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

2. 지정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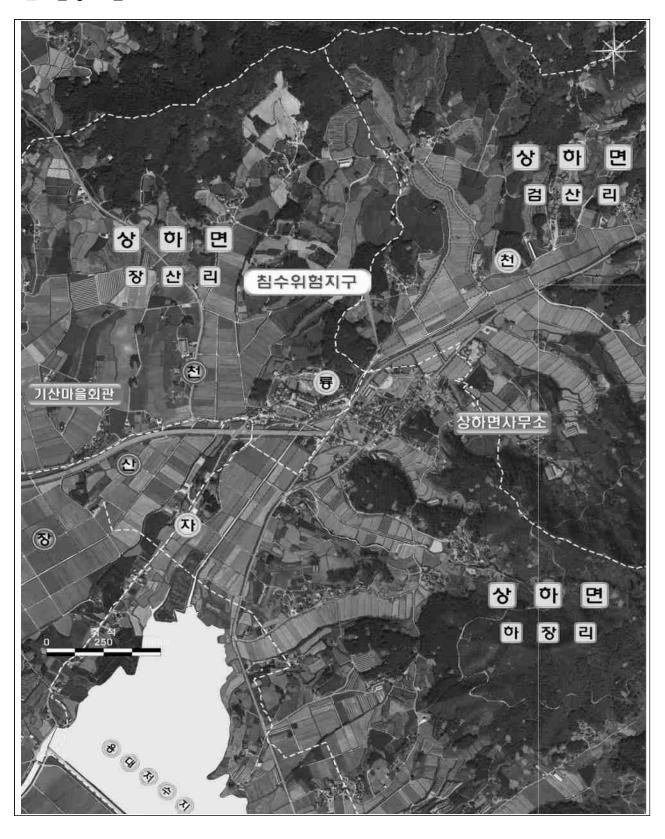
3. 도면열람 및 문의사항 :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063-560-2663)

2022년 8월 0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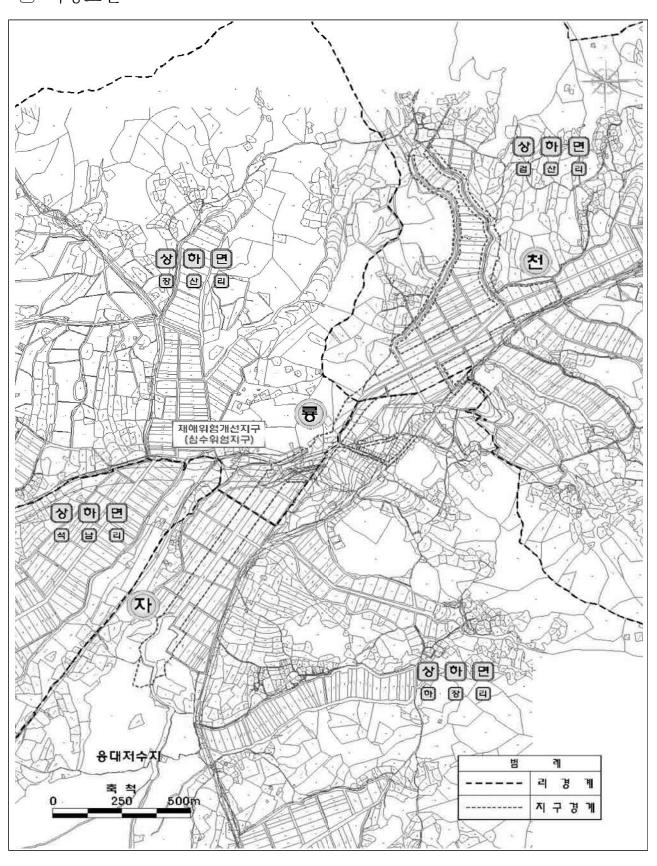
고창군수

■ 상하지구

□ 현황도면



□ 지형도면



고창군 고시 제2022-99호

고창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1단계)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고창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1단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재무과(**25**063-560-2480) 및 건설도시과(**25**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22년 08월 일

-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1. 고창 군계획시설(공공청가) 결정 조서 "경미한 변경"

,	도면		시석의	., -,		면 적(m²))		
구분	표시 번호	표시 시설명 시설의 전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8	공공 청사	고창 읍사무소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 일 원	9,070	증)107	9,177	고창군 제 2021-78호 (2021.06.04.)	

2. 고창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변경전 시설명 변경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시유		
공공청사 8	변경없음	면적 변경 당초 9,070㎡ → 변경 9,177㎡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고창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1단계) 실시계획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사업의 명칭 :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건립사업
- 3.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전체면적 9,177㎡ 중 금회 면적 6,9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 창 군 수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소지	대지					소 유	구 자	소유전	년이외의 -		
일련 번호	인비	리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총계			6,927	6,927						
1	고창	교촌	74-2	대	71	71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고창	교촌	74-5	대	314	314	고창군					
3	고창	교촌	74-6	도	281	281	고창군					
4	고창	교촌	74-7	도	17	17	고창군					
5	고창	교촌	74-8	대	311	311	고창군					
6	고창	교촌	74-9	대	393	393	고창군					
7	고창	교촌	74-10	대	7	7	고창군					
8	고창	교촌	74-11	대	8	8	고창군					
9	고창	교촌	75-3	도	43	43	고창군					
10	고창	교촌	76-5	도	30	30	고창군					
11	고창	교촌	281-1 5	차	2,285	2,285	고창군					
12	고창	교촌	283-3	대	1,233	1,233	고창군					
13	고창	교촌	283-5	대	826	826	고창군					
14	고창	교촌	283-6	대	33	33	고창군					

15	고창	교촌	283-3 3	대	143	143	고창군			
16	고창	교촌	283-4 5	대	67	67	고창군			
17	고창	교촌	283-4 6	대	46	46				
18	고창	교촌	285-1	대	397	397				
19	고창	교촌	285-3	대	154	154				
20	고창	교촌	285-4	대	181	181				
21	고창	교촌	285-1 1	대	87	87				

^{*} 기타 관계도서(게재생략)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 및 재무과(063-560-248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창군 공고 제2022-1325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취락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개발 및 생산활 동을 장려하고 외부 인구가 유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기준 완화(안 제7조제1항)
- 나. 자연취락지구 지정 밀도호수 기준 완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전화 : 063-560-2563 FAX : 063-560-25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담당자 전제민(전화:063-560-25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2022.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건설도시과장

1. 개정이유

O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쇠퇴해가는 취락을 정비하여, 주민의 개발 및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을 늘려 활력을 되찾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기준 완화(안 제7조제1항)

나. 자연취락지구 지정 밀도호수 기준 완화(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수반여부 :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7. . ~ (21일간)

- 결과 : 의견없음

4. 따로붙임

O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과 제8조 중 "15호"를 각각 "1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상호수) ① 지구 지정 대상	제7조(대상호수) ①
호수는 15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	<u>10ই</u>
다.	
제8조(밀도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제8조(밀도호수)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	
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u>15호</u> /1만	<u>10ই</u>
m²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자연취	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	한 조례 역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제초기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의견 제출자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22-1326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반영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당연직에 국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산관리지역 내 제1, 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전시장,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안 제65조의4)
- 나. 군계획위원회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안 제 67조제3항)

3. 의견제출

고창군 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전화: 063-560-2563 FAX: 063-560-25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담당자 전제민(전화:063-560-25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2022.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건설도시과장

1.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반영

○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당연직에 국장을 추가

2. 주요내용

- 생산관리지역 내 제1, 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전시장.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안 제65조의4)
- 군계획위원회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안 제6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수반여부 :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8. . ~ (21일간)

- 결과 :

4. 따로붙임

O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67조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5조의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 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67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6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	
수,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기	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 2022 -1329호

2022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볏짚존치) 공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철새 서식 환경보호를 위하여 2022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월 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2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볏짚존치)

2. 대상지역 : 동림저수지 일원 및 인천강 하구 일원

구 분	흥덕면(m²)	성내면(m²)	심원면(m²)	부안면(m²)
	동사리	동산리	용기리	선운리
	석우리	신성리		
대상(리)	신송리			
	용반리			
	치룡리			
	하남리			

** 자세한 사항은 해당면 사무소에 문의(해당 마을 문의 필요)

- 3. 신청대상자 : 위 지역의 해당 논농사 실 경작자
- 4. 계약면적 및 단가 : 약 계약면적 291ha, 계약단가 55원/m²
- 5. 신청방법
 - 신청 서식 청약처 및 계약체에 의거 경작자의 주소지 해당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
- 6. 접수기간 : 2022. 8. 10. ~ 2022. 8. 26.(17일간)

7.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지역조건>

- 겨울 철새 주요 서식지 우선 선정
-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도로변, 주택부근 등 철새의 서식환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 배제 될 수 있음

<경작조건>

- 관외 토지소유자 신청 제한(단, 지역주민이 경작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예산 범위내에서 중심지점 및 수변에서 가장 가까운 농경지 순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동림저수지 중심지점 :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848
- 8. 계약내용 : 벼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10^{-15} cm 가량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주어, 낙곡을 이용한 먹이제공 효과 및 휴식 공간 제공
- 9. 계약기간 및 계약금 지급방법

구	분	계약기간	계 약 금 지 급 계약금 일괄지급(12월)	비고
볏 짚 -	존 치	사업 확정후 ~ 2023. 2월 28일	이행점검 후 100%	금년 12월말 까지 지급완료

10. 접수 시 제출서류

- 1) 청약서 및 계약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2) 실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익직불제 등록증 등) 1부.
- 3) 통장사본 1부.

11. 유의사항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원, 볏짚환원(지력증진)사업 등 국가보조 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원면(560-8383), 흥덕면(560-8413), 성내면(560-8443), 부안면(560-85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청약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서식]

– 02	100 2	10 11 22 82 1011 1	[2 1_	11		
	생	J태계서비스지불	·제계약	청약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청약인	③ 주소					
		(전화학	번호 :)
	₩ 케이Է ≀ lặl	- 위치 :				
	④ 계약 사항	- 용도 및 면적 :			(m^2)	
청약	⑤ 계약내용	- 5.지지서비스/ 100.2	경작지/ 120.야	생동물먹이	제공	
내용		123. 볏짚존치계약				
	⑥ 계약금 지급시기	- 이행점검(현장점검) 확	인 후 12월 일	괄 지급(1009	%)	
Г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	·은 법 A]행령
		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대				
니다.						
			20)22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붙임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서

(앞쪽)

생 태 계 서 비 스 지 불 제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고창군수	Ů 2 "
계 약 자	계 약 상 대 자	•성 명: •주 소: •전 화:	
	계 약 지 역	• 위치 :• 용도 : 볏짚존치• 총 면 적 :] m²
계	계약의 종류	• 5.지지서비스/ 100.경 123. 볏짚존치계약 :	[작지/ 120.야생동물먹이제공 ㎡당 55원
	계 약 기간	•사업확정 후 ~ 2023.	2. 28
약	계 약 금액		원
	지 급 시 기	• 이행점검(현장점검) 확인	<u>l</u> 후 12월 일괄 지급(100%)
내 용	계 약 조 건	• 계약의 미이행 정도에 추진 협의회의 결정에 미지급 한다.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의거 계약금 환수 또는 계약잔금을
	" '	위반 시 추진위원회의 결 ³ •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지의 타용도 변경금지기간을 준수하며, 정에 의거 지급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계약상대자 성 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 약 자 고창군수 (인)

(뒷쪽)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경작을 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지역의 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적 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볏짚존치 등의 경우에서 낙곡 등 농작물의 일부가 철새의 먹이로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고, 볏짚의 중간수거 등으로 먹이 및 서식환 경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수심 30cm 이내의 담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시 미꾸라지 등 방사 가능).
- 5. 계약상대자는 생태둠벙을 조성하는 경우 수심 50~70cm로 담수를 유지하여 야 하며, 수생생물이 논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조성 면적의 50%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도록 식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보리재배를 할 경우 습해에 약한 보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2m간격으로 배수골을 설치하고 모두 배수구에 연결되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조수에 위해가 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독극물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 8.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계약당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실태조사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9. 기타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고창군은 <u>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u>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진행 및 보상금 지급
- 2.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진행완료 및 보상금 지급,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 보관

4. 동의거부 관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	하는 것이] 동의합니	나.

2022.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